

광공업동태조사지침

1978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광공업 동태 조사지침

1978

목 차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사항	3
다. 조사대상 및 단위	5
라. 조사시기	6
마. 조사방법	7
바. 집계 및 공표	7
2. 실사 및 면접	8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8
나. 실 사	9
다. 유고사업체 처리	10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13
마. 면 접	14
3. 조사표류 기입요령	15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5
나. 물량조사표 (I - A) 기입요령	16
다. 금액조사표 (II - A) 기입요령	30
라.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III) 기입요령	33
마. 전기업 동태조사표 (I - B) 기입요령	35

4. 검토 및 제출	37
가. 검토	37
나. 제출	38
부록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39
부록 II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	80
부록 III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129
부록 IV 도량형단위 환산표	134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1954년에 시작된 조사로서

- 1)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각종 광공업에 관한 지수를 편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와 투입원재료의 소비 및 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며
- 3) 주요 품목에 대한 월별 물량 통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사항

1) 조사의 종류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사로 구분된다.

가) 광공업동태조사

이 조사는 지정된 광공업사업체의 제품과 원재료중 매월 지정된 품목(부록Ⅱ-가, Ⅱ-나참조)에 대한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물량을 조사 파악하는 물량조사와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등의 금액으로 접근하는 금액조사로 나뉘어진다.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부문은 물량 조사한다.

- (1) 산업세세분류 32200 • 의복제조업
- (2) 산업세세분류 35220 • 의약품제조업

조사표 사용은 물량조사시에는 조사표 (I - A) 를 사용하며 금액 조사시는 조사표 (II - A) 를 , 의약품 생산 사업체 조사시는 조사표 (II - B) 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액조사 대상사업체라 하더라도 물량조사의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량조사표 (I - A) 도 함께 작성하되 「고용 및 급여」는 중복기입하여서는 안된다.

나) 전기업동태조사

전기업부문의 발전동태를 파악하고자 매월 전기업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 (I - B) 를 사용한다.

다)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금액조사에 대한 「디플레이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정품목의 품질규격 (부록 II - 다 참조) 에 대한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며 조사표 (III) 를 사용한다.

2) 조사표 내용

가) 재 품

월초재고량, 생산량, 자가소비량, 출하량 (시판, 수출로 구분),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원재료명 각 원재료마다 국산, 수입으로 구분하여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다) 고용 및 급여

피고용자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급여액

라) 조업일수

다.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전기(前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당원이 지정한 사업체만을 조사한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음

- 물 ● (物) 물량조사
- 금 ● (金) 금액조사
- 가 ● (價)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섶광(碎鉱), 세척(洗滌), 제질, 선광(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든 집안에서 행하여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2) 조사단위 (調查單位)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구역을 점거하고 그 곳에서 제품, 광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경영체에 속하는 몇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구내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량, 제품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일자는 매월 말이며 조사 기준기간은 그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마.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원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바. 집계 및 공포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부호기입, 기재집계, 분석 등을 거쳐 산업생산출하, 재고동향, 속보로 발간 매월 말일까지 공포하며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통계월보」 및 「산업생산연보」에 게재 공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광공업 동태조사가 잘 되고 안됨은 조사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조사원의 노력과 조사에 대한 이해여하에 달려 있다.

이 광공업동태조사는 여타의 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사업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일개 조사구가 포괄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조사원의 보다 열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또한 광공업부문의 성장이 급격하고 그 조사결과가 극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의 중요성과 사용되는 세 개념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원은 당해 조사구내에 새로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색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명부에 이미 부여된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지정생산품명 등은 조사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원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조사표 제품란에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생산량 유무를 막론하고 매일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등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은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켜서는 안되며 통계법에 따라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원 기록부는 사용이 다된 것은 반드시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원은

반납된 조사기록부 전량을 중앙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유고사업체일지라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실 사

1) 광공업 동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각종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일~12일 사이에 재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2)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월초제고량 일치여부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에서 결산지연 등의 사유에 의하여 기간내 조사표를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관할지도원의 지시를 받아 전월 생산량 자료를 참고로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잠정조사표를 제출한 후 그 다음 확정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한다.

단, 매월지연되는 사업체는 사전에 중앙에 보고하여 별도지시를 받는다.

4) 실사완료된 조사표는 재조사 지시나 질의 조회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실사 순방시 관할구역내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 등 변동사항을 아울러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및 명칭변경의 사업체를 말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위와 같은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업체명, 거절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별도 배포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그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주에게 협조를 종용하여야 한다.

2) 휴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휴업인 경우에도 매월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에는 미 해고된 잔류종업원수, 재고품의 출하 등에 관하여 기입하고 적요란에 [휴업중]이라 명기하여 조사표를 제출하고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재가동하였을 때는 정상적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폐업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명칭, 폐업일자, 폐업이유와 기타 참고자료를 「유고사업체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업한 월의 조사는 적요란에 「폐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며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또한 매월 그 사업체가 위치했던 곳을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요령에 의거 색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전사업체

가)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된 곳이 담당조사구 내인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적요란에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체변경사항을 기입하여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월에 한하여 조사표 적요란에 「이전」이라 기입하여 제출하되 별도로 사업체명,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전구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기입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상사업체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인하여 타조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본사 또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매월 이전된 전사업체의 소재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요령에 의거하여 색출보고서를 관할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이전사업체 편입에 대한 추가실사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그 사업

체를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사업체카드를 2
매씩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5) 소재불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에 문
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
출한다.

6) 전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전업하여 지정된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지정된 조사대상 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전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그 내용
을 상세히 기입하여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7)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명칭변경」이라 기입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변경전 명칭, 변경 후 명칭
및 변경일자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담당조사원 사업체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
정 보완한다.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광공업 동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규사업체를 색출 보고하여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1) 색출대상사업체

가)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조사 누락되었거나 그후 신설된 사업체로서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나) 광공업 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 중 전업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2) 색출보고요령

현지 조사에서 색출하거나 또는 시·군행정기관에 비치된 제자료에 의하여 색출하여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색출보고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실사

신규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하여 예비실사 지시를 받은 조사원은 해당 사업체의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표 제출시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대상사업체

조사원은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 즉시 그 사업체를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고 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체 카드 2매를 작성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존사업체의 신규품목

기존조사대상 사업체의 신규생산품목이 본조사의 「지정품목」일 때에는 해

당사업체의 조사표에 추가로 조사하고 최초조사월에는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바. 면 접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3) 대규모사업체(장부비치사업체)와 같이 축적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5) 조사원은 항상 응답자와의 원활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응답을 거절할 경우 재삼 취지를 설명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그 사업체의 대표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도 불가능할 시는 담당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 지시에 따른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작성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또박 기입한다.
- 3) 숫자 이외는 가급적 한자의 정자를 사용한다.
- 4) 규격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 품위 합량, 용량 등의 품질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 5) 각 수량에 있어 단위 미만과 금액에 있어 천원 미만은 4사5입 하여야 한다.
- 6)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7)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8) 오기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적색 또는 주색 잉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오기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오기된 것에는 횡선을 그어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

을 기입한다.

9)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석에서의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 하여도 좋다.

단,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때는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입이 완료된 조사표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10)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1)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적요란에 그 요인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물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과 같이 자리를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13)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번호는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나. 물량조사표 (I-A) 기입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L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기

〔주식회사 동국제강 대구공장〕

- (2)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 명만을 기입한다.
- (3)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시 구 로동 가
 전라남(도) 광주(시) 금남(동) 102번지의6호
 군 읍·면

- (4)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5)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나)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1)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 이라고만 기입한다.
-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 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3) 광업의 경우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 광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에 덕대라고 명기하여야

하고 광석의 판매처를 적요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한다.

다)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담당사업체명부에 부여된 조사구번호와 사업체번호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라) 산업분류

사업체별로 지정된 산업분류번호를 기입하되 반드시 5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 23010

23023

2) 제 품

가) 제품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원재료 또는 구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광공업부문이 아닌 건설업, 도소매업, 서서비스업, 무역상사, 개인등인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체에서 조사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할 품목은 그 사업체의 품목중에서 *지정품목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중간제품이 *지정품목분류표*에 있을 경우에만 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에 품목을

기입하기 전에 이 『품목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체의 제품 중에서 어느 것이 조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의 제품이 『품목분류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구체적인 성질 및 용도를 알아내어 해당품목명을 기입할 것이며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가) 품목번호 및 품목명

(1) 품목번호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만약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집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판이하계 나타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 : 004 금광석 0
005 은광석 0

(2) 품목명 『지정품목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하며 만일 제품이 동 분류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 X합성수지() → O요소수지()
X양은식기() → O알루미늄프레스가공식기 및 용기
X가구류() → O장농

또한 사업체명부상에는 각 사업체별로 생산품목이 명시되어 있

으니 조사표 작성시 생산량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할 경우나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 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특히 광업에서는 각 광석의 품위를, 화학제조업 및 기계기구제조업에는 규격 및 용량을, 반드시 규격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만약 제품명을 「지정품목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량 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병행단위조사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가지를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㉔ 월초재고량(전월말재고)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
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
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 사업체에서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제
품의 재고량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서 안된다.

㉕ 월중생산량

그 월의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1개월간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
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을 포함
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단위간
에 또박또박 기입한다.

생산이란 조사기간내에 최종적인 사내검사를 완료하고 그 사업체
에서 제품으로 정리된 것을 말하며 사업체에서 일단계의 생산을
하고 다시 다른 제품으로 제조되는 중간제품도 [지정품목분표]
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는 생산품목으로 간주한다.

예: 어떤 방직공장에서 면사 1,000 kg를 생산하고 그중 500 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 kg을 가지고 다시 600 m의 광목을 생산
하였다면 이 사업체의 생산량은 면사 1,000 kg, 광목 600 m으
로 기입되어야 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 기입한다.

전월생산량은 기보고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금월생산량

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요인을 밝혀 적오란에 기록한다.

(가) 자가소비량

그 월중에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한 량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광목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500 kg의 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반출된 중간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출하량 (판매량 등)

그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한 제품 및 타 사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중에서 조사기간 내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소유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하며 이를 시판과 수출로 구분한다.

1) 시판은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나) 동일 기업체 내에서 타 사업체에 반출된 것

다) 전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라)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하며

2) 수출은

가) 외국에 수출한 것

나) 외국에 견본 또는 선물로 증정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한다.

(사) 과부족보정량

그 월간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절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 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월말 재고량

그 월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량을 말한다.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text{당월말재고량} = \text{익월초재고량}$$

3) 원재료, 연료 및 동력

원재료라 함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원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를 말하며 이를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수입원재료라 함은 그 사업체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물론 무역회사를 통한 수입원재료도 포함된다.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시킨 경우의 원재료는 포함시켜야

하나 타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받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가) 원재료번호 및 원재료명

(1)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집계의 결과가 전혀 틀리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재료명

※ 지정원재료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하되 만일 동분류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고 추후 별도 지시에 따른다.

(3) 구분란의 국산·수입은 수입원재료가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 ○표시하고 만약 사업체가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달리하여 각 각 기입한다.

예: (가) 국산품만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분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ㄱ	①	2	50	200	100

(나) 수입품만 사용하는 경우

소 맥		ㄱ	1	②	20	100	
-----	--	---	---	---	----	-----	--

(대)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분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ㄱ	①	2	50	200	100
소 맥		ㄱ	1	②	20	100	

나) 규격 및 단위

(1) 규격

원재료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원재료의 규격을 그대로 적는다. 단, 동일명칭의 원재료라도 현저한 규격의 차이가 있으면 규격별로 구입하며 단일규격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환산하여 구입한다.

(2) 단위

각 원재료의 단위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되 이것이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다를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한다. 만약, 원재료명을 「지정원재료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수량의 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구입한다.

다) 월초재고량(전월말재고량)

그 월의 초일에 그 사업체가 보유하였던 원재료의 량을 말한다.

라) 구입량

그 월중에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로 구입한 량을 말하며 동일 기업의 타 사업체로 부터의 반입 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 자가생산량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중간제품을 말한다.

바) 사용량

광산물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그 월간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량(제품량의 자가소비량도 여기에 포함 됨)을 말하며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공급한 량도 포함한다.

사) 과부족보정량(過不足補正量)

「제품」에서의 「과부족보정량」에 준하며, 구입한 원재료 및 자가생산원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붙여서 기입하고 적요란에 「판매」라고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아) 월말재고량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준한다.

자) 경유, 중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 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량은 연료 및 동력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란에 기입한다.

4) 고용 및 급여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 근무무자는 제외시킨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피고용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생산종업원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 또는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유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蔵),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생산종업원이다.

(나) 광공업의 경우

채광(採鉞),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内支主),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鉞), 검사(檢査), 저장(貯蔵),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위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도 이에 포함한다.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 시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종업원수

그 월말 현재의 그 사업체 종업원수를 말한다. 만약 월말 현재로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 월말에 가장 가까운 급여제산일을 기준한 종업원수를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고종업원의 일별근무인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에는 월중조업일의 평균인원을 기입한다.

라) 월중연근무인원수(月中延勤務人員數)

그 월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 인원수, 다시 말하면 일

별근무원 (日別勤務人員) 의 월중누계를 말한다.

예 : 월중조업일수를 26 일이라 하고 처음 10 일간에 15 명씩 그리고 다음 6 일간에 20 명씩, 나머지 10 일간에 25 명씩 근무하였다면 월중연근무원수는 다음과 같다.

$$1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20 \text{ 명} \times 6 \text{ 일} + 2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520 \text{ 명}$$

마) 조업일수

그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한 일수를 말한다.

1 일 24 시간을 교대로 작업을 계속하였어도 조업일수는 1 일로 계산한다.

5) 적 요

(가) 생산 출하 및 원재료 증감요인

제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과 원재료 등이 전월과 비교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기입되지 않은 것은 지도원이 접수시 # 체크 # 하여 반력도록 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증감 여하에 관한 요인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예 : 시설보수로 인한 조업단축 (10 일 ~ 15 일까지)

수출수요 증대 (미국, 캐나다)

관남증대 (농협, 철도청)

건축비수기 등

(내) 고용 및 급여 증감요인

고용 및 급여에 대하여서도 종업원 및 급여액에 차이가 심하면 반드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예: 종업원수 증가는 임시종업원 ○○명 증가, 급여액 증가는 능력급 지급, 보나스()% 지급, 정기()% 승급, 특별시간의 수당지급 등

(대) 광업사업체는 광산물의 판매처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다. 금액조사표(Ⅱ-A) 기입요령

1) 제 품

가) 완제품

구입원재료 또는 자가생산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최종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과정 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포함된다.

나)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일중에 기성고분(既成高分)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미수금을 포함)을 기입한다.

그리고 수리수입액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는 수입액(미수금 포함)을 말하며 제조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을 포함한다.

다) 월초제품고액(전월말 제품재고액)

그 월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제품 및 기타 부산물, 폐품 등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단, 장부가격이 없거나 원가의 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미출고분(未出庫分)은 재고로 보지 않으며 또한 수탁생산(受託生産)한 제품은 수탁사업체의 재고액에서 제외된다.

$$\text{월초재고액} = \text{전월말재고액}$$

라) 출하액

(1) 시 판

그 사업체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월중의 판매액을 말하며 위탁판매 및 외상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기업체 내의 타 사업체에 반출한 것,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그 사업체 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반면에 구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대로 재판매하였거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그 사업체의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광산물은 최근역도(最近期渡))가 격에 의하며 물품세 부과대상품인 경우에는 동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수 출

수출한 제품은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하여야 한다.

마) 월말 재고액

사업체가 그 월의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및 기타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바) 과부족보정액

그 월간 화제,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액과 재물조사시 발견한 증감액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액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 $[-]$ 기호로 표시한 금액을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물량조사표(1-A)의 원재료, 연료 및 동력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3)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표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다만 한 사업체에서 물량조사와 금액조사를 동시에 작성할 경우에는 고용 및 급여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조사에서는 조사치

않고 물량조사표에만 조사 기입한다.

4) 적 요

물량조사표 적요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라.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Ⅲ) 기입요령

1) 조사대상품목 및 사업체

광공업 생산자판매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각 사업체에서 조사하여야 할 품목은 별책 「사업체별조사대상품목표」에 지정되어 있다.

2)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와 품목명은 별책 「사업체별조사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3) 품질규격 및 단위

「사업체별 조사 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지정된 품질규격 및 단위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품질규격 및 수량 단위를 기입한다.

4) 판매가격

판매가격은 공장인도가격(광선은 최근 역도가격)으로서 용기 포장을 요하는 품목은 그 비용을 포함하고 물품세 또는 유류세의 부과 대상인 품목인 것은 동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5) 평균가격의 계산방법

가격은 그 월의 월중 평균판매가격, 즉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그 월중의 일별판매가격의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수출품목일 때는 F.O.B가격으로 하되 조사표상의 원화표시를 지우고 미불로 기입하여야 한다.

6) 조사표 작성상의 유의사항

가) 조사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산업분류(지정품목일람표 참조) 등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 조사는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의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품질 및 규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다) 지정된 수량 단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수출품일 때는 미불가격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상 전월 가격란에 기입된 가격은 전월에 보고된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바)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의 등락(騰落)이 있을 경우에는 등락사유를 반드시 「적요」란에 기입한다.

마. 전기업동태조사표 (I - B) 기입요령

1) 발전량

가) 총발전량

그 월중에 발전한 총발전량을 각 시도별로 기입한다.

나) 자가소비전력량

각 발전소가 그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으로서 본사, 지점 및 각 영업소의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순발전량

총발전량에서 자가소비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말한다.

2) 종합손실전력량

각 단계의 송전 및 배전 과정에 생기는 손실 전력량의 총계를 말한다.

3) 수용전력량

그 월중에 판매한 수요 부문별, 전력량을 기입한다.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 공급한 전력량이며 산업용은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산업(서비스, 전철 등)별로 공급한 전력량을 기입하고 기타는 관, 군, UIC군, 사업자용(한전 사업소) 등에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4)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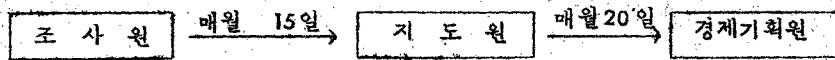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제조사 지시를 받지않도록 반드시 다음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제품의 단위에 있어서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수량단위의 사용여부
- 3)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대로 기입되었-으며 사업체명부상에 지정된 생산품목 누락 여부
- 4) 월중의 생산량과 원재료사용량의 합리성 여부
- 5) 전월말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과 금월초재고의 일치여부
- 6) 「월초재고량+월중생산량-자가소비량=출하량(시판량+수출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7) 원재료명 원재료번호 및 단위가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하여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8) 원재료에 대하여 「월초재고량+월중 구입량+자가생산량-월중사용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및 국산(1)이나 수입(2)의 구분 표시 여부
- 9) 월중의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란의 증업원수와 타당성 여부
- 10)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

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1)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 출



- 1) 조사원이 직접 담당하면서 배부한 조사표는 늦어도 실사기간 최
종일 까지 그 전부를 회수하되 개개의 조사표 오기 누락 등이
없는가를 「조사표검토요령」에 의거 검토한 후 불완전한 점이 있으
면 즉시 재 조사하여야 한다.
- 2)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
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 달의
15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토록 하여야 한다.
- 3)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데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
당구내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 4)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
를 조사원은 담당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I . 문제점 및 유의사항

일반적인 사항

이 문제점 및 유의사항은 그 동안 광공업동태조사를 시행한결과 일어나는 제 문제점과 실사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요점을 수록한 것으로서 본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점과 조사질의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계집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성이 도저히 없을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광업, 화학, 기계제조업, 섬유, 등은 각 품위, 함량, 용량, 비율, 등의 품질, 규격을 반드시 기입토록 한다.

또한 동일 명칭의 품목일지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한다.

(3) 유고사업체가 발생하면 즉시 지도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폐업, 이전, 소재불명, 전업사업체도 조사중지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며 사업체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사업체 명부를 정정한 후 보고하고 조사를 계속한다.

지도원은 유고사업체보고중 이전의 경우는 담당구역을 확인하여 이전조치한 후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여타 유고사항에 대해 선 취합하여 중앙에 일괄 보고한다.

(4) 조사원은 조사원기록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사원기록부에 조사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조사시 증감체크와 월초재고량 일치여부,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 분실의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문제되는 품목은 조사지침서 부록인 「제품해설집」을 활용토록 한다.

제 품

산업소분류 210,230,290 광업

(1) 광산물조사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아래에 표시된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물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월간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당시에 표준이 된 규격 또는월간평균규격으로 품위를 정하고 기준품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기준품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형석 30%를 생산하였는데 그 평균품위가 CuP, 70%였다면, 기준품위는 80%이므로 $30\% \times 70 (\% : \text{평균품위}) \div 80 (\% : \text{기준품위}) = 26\%$ 조건표에 표시된 품목은 조건표에 의거 환산토록 한다.

예 Cu 8% 10% 은 $10\% \times 0.493 = 4.9\%$

품위환산 조건표에 표시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품위환산을 융통성있게 하여야 한다.

Pb (연광석) 44.3% 10%을 기준품위로 환산할 경우
 0.869 (연 44% 승수) + { [0.891 (연 45% 승수) - 0.869 (연 44% 승수)] $\times \frac{3}{10}$ } = 0.876 (연광석 44.3%의 승수) = 10% (44.3%) \times 0.876 = 8.76%이다.

또한 조사표에는 사업체에서 나오는 자료와 그 자료를 기준품위로 환산한 불량 두 가지를 기입하여 보고하고 기준품위로 환산한 불량은 매달 등식이 맞아야 한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광업사업체일 경우에는 매월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품위와 단위를 꼭 기입하고 적요년에는 증감 요인과 매광대상국 또는 대상처를 필히 기입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광천물품위환산조건표

%	동	%	철	연	아연	%	중석	모리브데넘	비	고
1	0.057	20	0.275	0.374	0.372	60	0.819			
1.5	0.086	25	0.357	0.473	0.471	61	0.836			
2	0.115	30	0.447	0.574	0.572	62	0.854			
2.5	0.144	32	0.485	0.615	0.613	63	0.871			
3	0.174	33	0.504	0.636	0.634	64	0.890			
3.5	0.204	34	0.524	0.657	0.655	65	0.907			
4	0.235	35	0.544	0.678	0.676	66	0.925			
4.5	0.266	36	0.563	0.698	0.696	67	0.944			
5	0.297	37	0.583	0.719	0.717	68	0.962			
6	0.360	38	0.604	0.740	0.738	69	0.981			
7	0.426	39	0.624	0.762	0.760	70	1.000	0.743		
8	0.493	40	0.643	0.783	0.781	71	1.018	0.755		
9	0.561	41	0.653	0.804	0.802	72	1.038	0.767		
10	0.630	42	0.663	0.826	0.827	73	1.057	0.780		
11	0.700	43	0.706	0.847	0.846	74	1.077	0.792		
12	0.733	44	0.727	0.869	0.868	75	1.097	0.804		
13	0.847	45	0.747	0.891	0.890	76	1.116	0.817		
14	0.922	46	0.772	0.913	0.912	77				
15	1.077	47	0.793	0.934	0.934	78	1.156	0.842		
16	1.156	48	0.819	0.956	0.956	79		0.868		
17	1.236	49	0.840	0.978	0.978	80		0.884		
18	1.317	50	0.862	1.000	1.000	82		0.920		
19	1.400	51	0.883	1.023	1.023	84		0.946		
20	1.484	52	0.910	1.045	1.045	86		0.959		
21	1.577	53	0.932	1.067	1.067	87		0.973		
22	1.664	54	0.955	1.090	1.090	88		0.986		
23	1.752	55	0.977	1.112	1.112	89				
24	1.842	56	1.000	1.135	1.135	90		1.013		
25	1.932	57	1.028	1.157	1.158	91		1.027		
26	2.025	58	1.056	1.180	1.181	92		1.030		
27	2.119	59	1.080	1.202	1.203	93		1.054		
28	2.214	60	1.104	1.225	1.227	94		1.067		
29	2.310	61	1.130	1.248	1.250	95		1.081		
30	2.408	62	1.157	1.271	1.273	96		1.095		
31	2.507	63	1.182	1.295	1.296	97		1.109		
32	2.607	64	1.206	1.318	1.320	98		1.123		
33	2.709	65	1.233	1.344	1.347	99				
34	2.823	66	1.261	1.370	1.373					
35		67	1.285	1.395						
		68	1.310	1.420						

기준품위 : 무 연 탄 : 4,800 ~ 5,000 Cal

철 광 석 : Fe 56%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것)

중 석 광 석 : Wo 70% (")

금광석 (금괴) : Au 99.9%

은광석 (은괴) : Ag 99.9%

동 광 석 : Cu 15% (")

연 광 석 : Pb 50% (")

아연 광 석 : Zn 50% (")

몰리브데넘 광 석 : MoS₂ 90% (")

석회 석 : CaO 50%

인상 흑연 : Pb 75%

토상 흑연 : Pb 75%

활석 광 석 : 각급

형석 광 석 : Ca F₂ 80%

납 석 : SK # 32

고령 토 : SK # 34

(2) 금광석 및 은광석은 제련된 금괴 및 은괴만을 조사하되 제품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종으로 기입한다.

비	품목번호	품목	규격	단위
	004	금 광 석	99.9%	g
	273	금 괴	99.9%	g
	005	은	99.9%	g
	272	은 괴	99.9%	g

규산(珪酸) 질광석을 생산하여 자가제련하는 광산의 경우에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 제련구분: 자가제련 # 이라고 기입하고 생산량 및 출하량을 제품란에 기입한다.

유화질 금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된 원광석을 매광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매광처와 품위별로 매광량(원광석)을 기입 보고한다.

(3) 혼합 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평균(표준) 함유량에 따라 구분조사한다.

(4)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원료로 재투입하는 전량을 # 자가소비량 # 으로 기입한다.

(5) 수출광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매월 수출국명과 수출량을 기입한다.

예: 수출량 3,000톤(미국 1,000, 일본 2,000톤)

(6)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가)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취수연은 물리브테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7) 무연탄

무연탄의 재고는 신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또는 역두, 소비지재고를 불문하고 판매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한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사업체의 재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록 산지에 있는 재고라 할지라도 판매(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체 소유가 아니므로 출하로 간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산업소분류 311-312 식료품제조업

(1) 농산물 통조림은 복숭아, 꿀, 버섯 등 야채 및 과일 통조림을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2) 분유와 연유에 청정유 또는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말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 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 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켜 분말화된 것이다.

(3) 아이스크림에 하드류는 제외한다.

(4)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냉동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은 냉동해산물에서 제외되며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시킨 것은 포함 조사한다.

(5) 어 및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Can) 또는 상자(C/S) 등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kg으로 조사 기입한다.

- (6) 해산물통조림에 축산물통조림(최고기등)이나 농산물통조림(과일통조림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수산물통조림만 조사한다.
- (7) 밀가루는 민수용 관수용을 포함 조사한다.
- (8) 식빵, 설탕과자의 단위는 kg이다. 개 또는 봉지로 보고 하여서는 안되며 kg으로 환산하여 조사 보고한다.
초코렛, 드롭프스, 카라멜, 제리, 캔디 등은 설탕과자에 포함시키거나 유과, 정과, 다식 등은 제외한다.
- (9) 된장에 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되는 검은 빛갈이다.
- (10) 엿의 단위는 ㄱ이다. 물엿 역시 ㄱ으로 환산 조사한다.
- (11) 마가린과 쇼팅을 구분 조사한다.
- (12) 이스트에는 생이스트와 건조이스트(dry-yeast)가 있는데 포함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13 음료음제조업

- (1) 소주나 탁주에 있어서는 동종류나 주종끼리 사업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된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생산하는 사업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탁주의 경우는 각 도시의 단위까지는 통합이 완료되었으니 합동관리위원회 산하에 포함된 사업체와 현재 생산중인 양조장을 구분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한다.
- (2) 소주, 주정,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의 지정 단위는 kl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되"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로 환산하여야 한다.

1 되 = 1.8ℓ 1ℓ = 556

(3) 합성맥주도 맥주에 포함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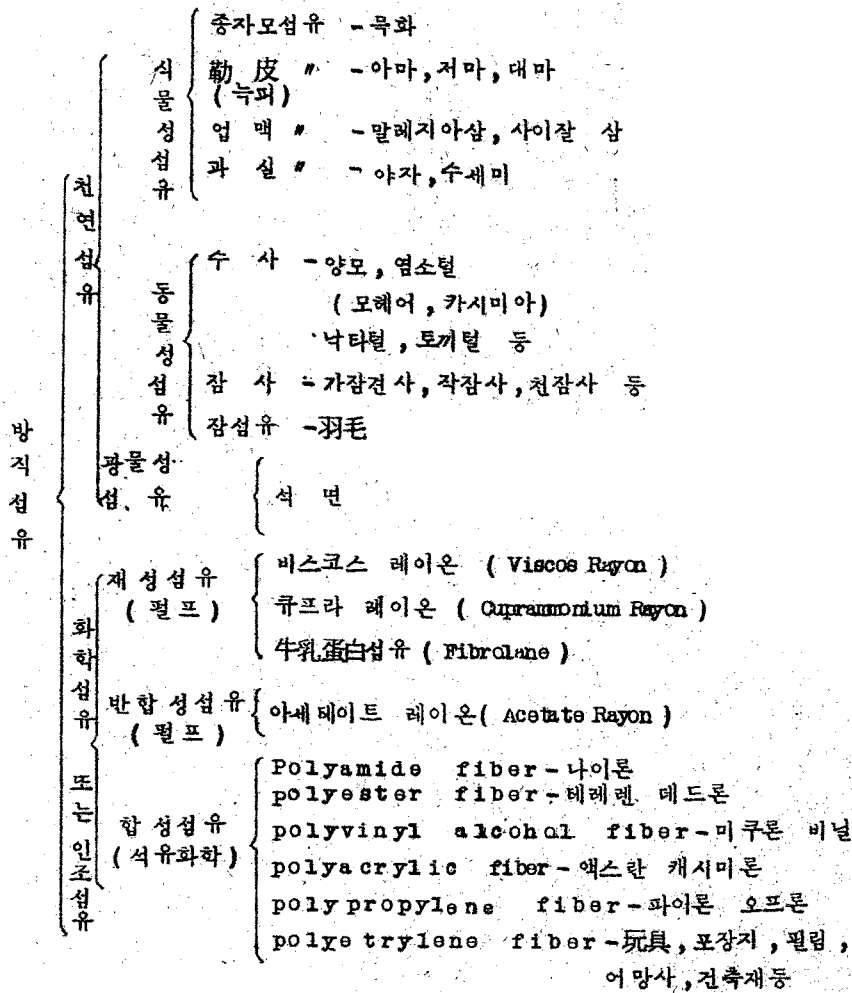
(4) 동일품목으로서의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가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051 } X	소 주	25°	ℓ	200
051 }	소 주	30°	ℓ	300
051 O	소 주	25~30°	ℓ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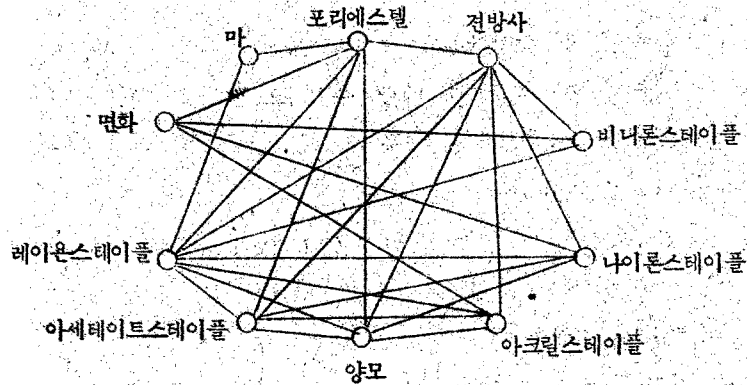
(5) 주스는 환타, 오랑C, 미린다, 씨니텐, 망과C, 섀얼, 등을 말하며 사이다, 콜라를 제외 한 청량음료이다.

산업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1) 섬유분류



(2) 현재 각 섬유의 혼방되는 관계도표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혼방사는 상기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혼방되는 섬유의 종류는 2종 이상인 경우도 많다.

(3)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가)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

① 면과 1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되 동울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② 면과 2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울일 때는 혼방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이는 가격순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①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예: 혼방소모사·모혼방직물)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물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미만일 경우에 한함.

F) 견과 화섬의 혼방

① 기준 중량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물일 때 견을 채택한다.

(예: 견혼방직물)

② 견과 2종 이상의 타 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 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단, 견 3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물일 때는 견을 택한다.

FH) 2종의 화섬혼방

동분율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물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으로 호칭한다.

※ 혼방사 및 혼방직물 조사시는 조사표의 규격란에 반드시 혼방비율을 기록할 것.

또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적요란에 원재료명과 혼방비율을 명기하고 견본을 조사표 후면에 첨부하여 보고할 것. 모든 혼방사 및 혼방직물(교직포함)은 상기요령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 한다.

(4) 품목구분 요령

① 면사: 순면사 및 면혼방사 포함

※ 면혼방사의 식별기준 혼방사 요령에 의한다.

② 재생섬유방적사: Viscose Staple fiber (원료: 펄프 Inter 등의 섬유질, SF면) 을 원재료로 한 SF系 및 비스코스 filament (비스코스인견사) 를 칭함

현재 비스코스인견사는 원진베이은Co과 임직공장(수탁업체)에서만 생산되므로 타 업체의 생산품중 인견사로 조사되는 예가 허다하니 그러한 경우 반드시 원재료 난을 활용하여 조사지지를 받도록 한다.

③ 합성(화학)섬유방적사(회섬사): 석유화학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 생산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사(絲)의 상태 단, 합성장섬유사(filament)로서 직접 방적할 수 있는 합성섬유도 포함시킬 것.

④ 아마사(亞麻絲): 마사(麻絲)에는 아마(亞麻), 저마(苧麻), 황마(黃麻), 대마(大麻), 라마 등이 있으나 이중 아마(亞麻)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사만을 칭함.

참고: 현재 대농Co와 그 임직공장의 등첩 품목임을 강조한다.

⑤ 생사: 누에 고치는 상견(上繭), 중견(中繭), 하견(下繭), 쌍견(雙繭)(玉繭, 왕고치)으로 대별되며 그 중 한견으로 만들어진 실.

상견(上繭): 견형이 바르고 견층이 두껍고 오염되지 않은 결점이없는고치

중견(中繭): 견형이 바르지 않은 것과 견층이 얇으나 오염도가 적은

고치(족착견(族着繭), 부정형견(不正形繭), 오견, 먼견, 파봉견, 동절견 등)

하견(下繭): 사농견(死籠繭), 혈견(穴繭), 또는공명견(孔明繭), 박피견(薄皮繭) 등

쌍견(雙繭): 두마리 이상의 누에가공동으로 한개의 고치를 지은 것.

⑥ 견방사: 생사를 제조할수 없는 부잠사, 페너, 박견, 출각견, 찌꺼기고치, 생피저, 양견, 섞은고치 등으로 제조된 실(수방사, 주방사, 견수방사포함)

⑦ 순소모사: 비교적 길고 간추려진 섬유를 사용하며 방적공장에서는 섬유를 잘 빚어내려 평행직선 모양으로 간추려 단섬유를 제거하는데 노력한다. 이때 단섬유로 된 실이 순방모사가 된다 (all wool)

⑧ 방모사: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칭하며 혼방방모사도 포함한다 (방모가 40%이상)

특히 소모사와 방모사구분은 생산공정이 소모공정과 방모공정을 거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⑨ 순소모직물: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⑩ 순방모직물: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 모포, 겨울용 오바, 홈즈방에 사용한다. (순방모사로 짠 직물)

⑪ 모혼방직물: 소모사 및 방모사와 타사(화섬사 및 면사등)가 혼방된 직물을 말하며, 이때 혼방비율을 기재할 것.

⑫ 혼방합성섬유직물: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이상, 견과 혼방일때 70%이상)

㉓ 각종 화학섬유연사 : 2 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실, 합사는 꼬지않고 합해 놓은실, 이는 화학섬유에 한하여 면사는 제외된다.

혹견연사 또는 연신사 의장연사라 할 때도 연사로 분류한다.

어망사와는 용도를 기준하여 구분한다.

㉔ 화학사양말 : 단위는 필히 천족을 사용하고 순모, 순면 양말은 제외하며 화학사 60%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한다.

특히 팬티스타킹 타이스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말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㉕ 면직물에는 광목(소창 포함),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용, 면부지를 포함하여 면직물이라 기입한다.

(단 플멘을 제외)

(5) 자가 사용량의 문제

이미 조사되고 있는 지정품목 중 다음의 품목은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재투입에 충당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출하에서 분리하여 자가소비량을 조사한다.

자가소비량을 조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면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광목과 면부지를 동시에 생산할 때는 반드시 면사 생산량중 외부에 출하되는 량과 광목과 면부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면사 ————— 광목, 당목, 포푸린, 면부지, 용 등 일반면직물

순합성섬유사 ————— 순합성섬유직물

혼방합섬섬유사 ————— 혼방합섬섬유직물

순소모사 ————— 순소모직물

혼방소모사, 혼방방모사 ————— 모혼방직물

순방모사 ————— 순방모직물

생사·견방사 ————— 순본견직물, 견혼방직물

연사, 어망사 ————— 어망, 로프

재생섬유사(인견사, 스프사) ————— 재생섬유직물

특히 직물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가소비량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물제품 및 의복류생산이 없으니 의복류만 빠짐없이 금액조사표에도 조사할 것.

(6) 메리야스외의(Sweater 포함) 중

다음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Y-Shirts, nylon내의, 이너넥츠, 부라우스, 동내의, 스텝스 등은 제외한다.

(7) 섬유제품중

지정 단위가 m 로 되어 있는 품목을 업체사용단위 yds로 조사되고 있는데 규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m 로 환산하고 규격란을 활용한다.

예 : ① 갈포벽지 1 Roll = 6,6885 m 된다.

② 직물 폭이 36인치이며 길이 1 yd는 $0.9144 m \times 0.9144 m$ 로 계산해서 0.8361 m^2 가 된다.

(8) 지정 품목중

사업체에서는 민수용 관수용 수출용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하더라도 종합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성섬유직물: 나이론, 다후다, Jersey, 앙고라, 폴리텍스, 케미칼,
트라이코트

순 본견직물: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양단, 쓰르기,

재생 섬유직물: 인견양단

합성섬유방직사: stretch사, nylon사, filament사, 포리에스틸사,
테포린올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사, 中細絲(단 fiber는 제외함)

사업체에서 견방사가 주방사, 수방사, 견수방사 등으로도 분류되는 것도 견방사로 조사할 것.

산업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 (1) 재고액은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하여,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2) 수출업체는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한다.
- (3) 적요란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입한다.

예: Y사쓰 수출증대 (니축)

아동복 외의 수출증가 (인도네시아)

남자용 양복 수요증가

산업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피의부제외)

가)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수혁(갑피혁)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2)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중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3) 이혁(Sole)

(용도) 작업용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 내고난 일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4) 저혁

(용도) 창용·마짚·공업용 혁펠트

(성질) 특수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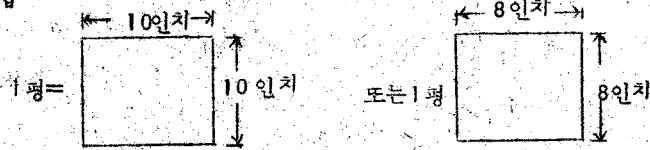
※ 복수혁과 저혁을 합하여 우혁으로 조사하며 군화등 타생산품을

만들기 위하여 자가 소비가 있을 때는 출하와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소가죽의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정 단위는 m²이므로

로 반드시 이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단위환산법



사방 10인치 = 0.0645 m²

사방 8인치 = 0.0413 m²

1 매 = 30 ~ 40 평

1 매 = 3.3 m² (30 평)

1 매 = 3.7 m² (40 평)

- 나) 비닐계 트렁크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리방인치 (보통 12인치 x 11인치 x 6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여 학생용책가방이나 서류가방은 제외한다. 또한 비닐 이외의 원재료 즉 직물제 등은 제외한다.
- 다) 핸드백에서 학생용 책가방이나 구슬백, 지갑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또한 피혁이나 합성피혁·P.V.C이외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24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제외)

- 가) 남자용 가죽신과 여자용 가죽신에서 소아용 가죽신은 제외하고 육군단화는 남자용 가죽신에 포함한다.
- 나) 군화 및 가죽장화는 목이 긴 군화와 장갑화, 작업화, 등산화, 폴트화, 가죽부츠 등을 포함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31 나무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 이 산업에 속하는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단위는 m^2 인바, 아직 도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하여야 한다.

즉 1才 ≒ $0.00334 m^2$ $1 m^2 = 300 才$

1 B/F ≒ $0.002359 m^2$ $1 m^2 = 423.77 B/F$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각기두께는 18 X 18당 m^2
가로 (F)	세로 (F)	두께 (mm)		
4	8	3.2	0.0095133	0.0002973
3	6		0.0053512	
4	8	3.6	0.0107024	0.0003345
3	6		0.0060201	
4	8	4	0.0111892	0.000372
3	6		0.006689	
4	8	6	0.017837	0.000557
3	6		0.010034	

(2) 소할재는 각재 및 판재에서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32 가구 및 장차물제조업 (금속가구제외)

(1) 연관품목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즉,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경대를, 또한 책상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대부분 제조하고 있으나 단일 품목만 조사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2) 판매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되나 대부분 직영공장 또는 납품처를 가지고 있으니 누락 사업체가 없도록 한다. (직영공장, 납품처를 색출할 것)

(3) 철계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4) 대형찬장, 책장등은 장농에 포함한다.

(5) 책상에서는 탁자, 티 테이블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학생을 책걸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6) 탁자, 티 테이블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7) 장지문은 건물건축시 소요되는 모든 목제문짝을 포함하여 조사하되 대문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 일반적으로 단위를 조사지침서에 지정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점을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골판지원지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라이너지 (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라고도 함)와 가운데의 입체구조의 배체가 되는 중심원지 (S원지) 등을 골판지 원지라고 하므로 이들을 함께 조사하여

야 한다.

- (3) 골판지 상자 및 용기는 단위를 천[㎡]로 조사하여야 한다.
- (4)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 (5) 판지를 마니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 (6) 종이제품은 500 (1연) × 1,091 (가로) × 0,788 (세로) × 종이의 중량=kg으로 환산한다.

산업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 (1) 일간신문의 조사단위는 천부(千部)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할 것이며 일일발행부수의 월간누계를 조사한다.
- (2) 잡지, 정기간행물 및 비일간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조사시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보고란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 (3) 일반인쇄물을 권이나 부수로 조사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지정단위는 연(連)이다. 그러므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량으로 조사한다.
- (4) 출판(발행)업에 있어서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하여야 한다.
- (5)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등은 재고량이 있을 수 없으며 회사직원용등도 출하량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6) 일반인쇄소에서 주문에 따라 인쇄되는 신문, 잡지류는 조사하지 말고 일반 인쇄물만 조사한다.

- (7) 노트조사시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8) 앨범조사시 학교용 졸업앨범 등 기념앨범은 제외한다.

산업분류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1) 황산(유산), 염산, 가성소다 조사시에는 지정농도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 ① 황산은 98%, 35%, 40% 등이 현재 생산되는데 98%로 환산해야 한다.
 ② 염산은 35%, 100% 등이 생산되는데 35%로 환산해야 한다.
 ③ 가성소다는 40%, 46%, 97%, 100% 등이 생산되는데 100%로 환산해야 한다.
- (2) 암축산소의 단위는 본(병)이 아니고 m^3 이다.
 $1 \text{ 본} = 7 \text{ } m^3$
- (3) 아세치렌가스는 kg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本), 또는 m^3 는 반드시 kg 으로 환산해야 한다.
- (4) 호르마린은 합판 접착제로 대부분 소비되므로 합판 조사시에는 반드시 호르마린 생산여부도 확인 조사한다.
- (5) 스테아린산은 세탁비누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므로 세탁비누 조사시에 스테아린산도 조사한다.
- (6) 염료는 각종 염료(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 등)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 (7) 살충제 살균제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초제도 생산하니 누락없이 조사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유의하여 생산여부를 확인한다.

(8) 나프사 분해공장에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치렌, 프로피렌, 부타디엔 키세렌, 싸이크로헥산 등이 생산되니 누락없이 조사한다.

(9) 폴리에틸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구분하여 조사한다.

(10) 용성인비 조사시 용과린도 조사하며 용과린 제조시 사용하는 용성인 비란계 품도 용성인비에 포함 조사한다.

(11) 화학섬유의 종류에는

① 재생섬유 - 비스코스

② 반합성섬유 - 아세테이트

③ 합성섬유 - 아크리릭, 나이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피렌, PVA 등이 있으며

원재료로 화학펄프, 카프로락탐 (Caprolactam), 아크릴로니트릴 (A.N Monoma), PVA powder, 에치렌그리콜 (EG),

polypropylene Resin, DMP, TPA 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모든 화학섬유의 종류별로 S.F (Staple fiber), Filament, Tow로 구분 조사한다.

(12) 가소제에는 DOP, DOA, DBP 등 아주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전부 조사한다.

(13) 특히 공업용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이 자기소비량이 있으므로 조사시 이점을 유의하여 자기소비량조사에 누락없도록 한다.

산업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1) 페인트는 수성과 유성으로 구분조사 하여야 한다. (텍스는 수성페인트로 조사)
- (2) 의약품조사에 있어서 한 사업체에서 의약품의 품목(예, 화장품, 치약, 음료품(오란씨 등)을 병행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의약품만 금액조사 하고 기타 품목은 물량 조사한다.
- (3) 의약품이 반송되었을 때 그것이 재출하 할것인지 폐기처분할 것인지 구분하여 폐기처분은 과부족보정량에 기입하고 재고액에서 제외한다.
- (4) 클리세린은 우지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클리세린도 함께 누락없이 조사한다.
- (5)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 고형, 액체 모두 합산하여 조사한다.
- (6) 향료 조사시 화장품향수는 제외한다.
- (7) 화장수에 밀크로손류는 제외한다.
- (8) 화장분에서는 화운데이션을 제외하고 고형 및 분말만을 조사한다.
- (9) 화장크림은 크린싱크림, 폴드크림, 영양크림등 각종 고형크림을 전부 조사한다.
- (11) 머릿기름에는 포마드와 헤어오일, 헤어크림등도 포함 조사한다.
- (11) 성량은 가정용먹용기준(대형)으로 1,000g이 1단위가 된다.

산업소분류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 (1) 석유의 1.B.T.U (바렐) = 158,984 로 환산

- (2) 윤활유에는 구리스와 식물성 윤활유는 제외한다.
- (3) 각종 연탄은 반드시 지정 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시) 22공탄 277 개 = 1%

31공탄 180 개 = 1%

49 " 80 개 = 1%

또한 각종 연탄공장이 통합 단일공장으로 되어 있으니 통합된 사업체 명부와 현재 남아 있는 사업체 명부를 보고하고 업무지시에 따라 중전의 사업체는 조사 중지한다.

산업소분류 355 고무제품제조업

- (1) 방한화는 외부 전체면적에서 고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장화에, 섬유부분의 비중이 크면 포화에 포함한다.
- (2) 운동화는 혼련화(통일화), 노동화, 일반운동화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 (3)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권(券)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尺) = 15.1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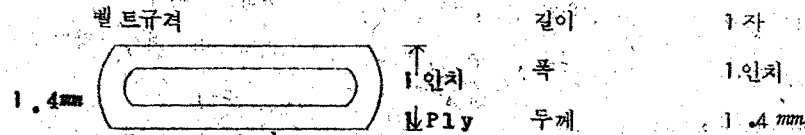
- (4) 케미슈즈는 기타 플라스틱제품에서 조사한다.
- (5) 채생고무를 원료로 한 고무박킹 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 (6) 스폰지는 천연및합성고두로 만든것만 조사하고 합성수지(P.V.C등) 스폰지는 플라스틱제품으로 조사한다.
- 스폰지의 단위는 m³이므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조사하였을 때는 m³로 환산하고 환산 불가능할 때에는 규격을 기입한다.

일반적으로 스펀지 1평의 규격은 가로 1자 세로 1자 두께 10mm이며 이 때는 1,000평이 1㎡이다.

⑦ 각종 고무벨트 (V형 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천ply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척(尺) 또는 m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 / ply = 폭(幅) \times 포층수(布層數) \times 길이$$

$$1 Ply = 0.33 m / Ply$$



보통 고무벨트는 두께가 3점 (1.4 X 3) 4점, 5점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산업소분류 356 달리분류되지않은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1) 플라스틱제품을 세분하여 식기 및 용기류, 신, 필름, 호스 및 파이프, 레자로 구분 기입하고 끝난에 이들과 기타제품을 합계하여 별도 기입한다.
- (2) 운동화나 고무신제조업체에서 캐미슈즈와같은 플라스틱제 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할것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 (1) 원유리는 2mm로 환산할 것. (단위 상자)
 * 예시 * 규격 3mm,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환산하여 규격 2mm,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환산한 치수인 규격 2 mm, 300 상자로 조사하고 포장 (상자)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환산하여 보고한다.

판유리 1 상자 (case) = 100병 = $1008 / F (ft^2) = 9.29 m^2$ 로 환산 한다.

- (2) 콘크리트블럭을 조사할 때는 보도용 콘크리트블럭을 구분 조사한다.
- (3) 타일 조사시 오지타일, 내장타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은 합산하여 보고한다.
- (4) 유리 제품은 유리식기, 유리약병, 유리술병으로 구분하여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 (세죽잔, 양주잔, 소주잔, 재털이, 화장품병, 식초병, 간장병, 농약병, 꽃병, 니스병은 유리제품에서 조사하지 아니한다)
- (5) 애지는 고압애자 (3,300V 이상) 와 저압애자 (3,300V 미만) 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전기스윗처용은 제외)
- (6) 벽돌 (소성품) 은 각종 적벽돌 (赤) 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 (오지벽돌) 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소성벽돌 (적벽돌) 1매는 2 kg 500 g 이니 무게로 나왔을지 1매 = 2.5 kg 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7) 흙관 스프레트연통은 콘크리트관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 (8) 소석회 조사시는 석회석 생산량도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석회질 비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 (9) 내화벽돌 (# 8. k 32) 는 330매를 1%으로 환산한다.

(10) 석면스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두께	가로	세로
소골스레이트	6 자	65 mm	720 mm	1820 mm
(주택용)	7 자	"	"	2120 mm
	8 자	"	"	2420 mm
대골스레이트	6 자	"	960 mm	1820 mm
(공장, 극장용)	7 자	"	"	2120 mm
	8 자	"	"	2420 mm
기와스레이트		6 mm	570 mm	1050 mm
(농촌 개량지붕형)				
평 스테트		4.5 mm	910 mm	1,820 mm
(고급주택용)		6 mm	910 mm	1,820 mm
		6 mm	1,200 mm	2,420 mm

산업중분류 371 제 1차철강산업

(1)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원강 등은 모두 봉강에 포함한다. 강반성품 품에는 부름, 빌렛, 슬라브, 쉬트바, 대강, 핫코일등을 포함 조사한다. 단, 철근은 봉강에서 제외하여 구분 조사한다.

(2) 합금철

망강철 (탄강철), 규소철, 규소망강철, 크롬철, 불리브멘철, 니켈철, 텅스텐 스텐 철등을 조사하고 비금속 합금을 제외한다.

(3) Angle (ㄷ형강), Channel (ㄷ형강) I-빔은 형강에 포함한다.

(4) 상수도관 구조관은 강관에 포함한다.

(5) 강판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박 판: 3 mm 이하

중후판: 3 mm 이상

(6) 주철로만든 이형판 Y등은 주철판에 포함한다.

(7)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취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은)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 쇠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단주철을 생산하며 금속관 이음쇠를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 품목이 가단주철과 금속관 이음쇠의 두가지가 되며 순수하게 출하된 것만 각각 출하량에 기입한다.

(8) 기계용 주물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녹인 쇠를 여러가지 형틀에 부어 만든 제품만을 (기계의 原体) 조사하여야 하며 철재 가마솥은 알미늄 주물제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미늄 주물로 만든 제품은 알미늄주물제품으로 구분조사 하여야 한다.

(9) 다음 품목들은 자가 소비량이 있으니 유의하여 출하량과 별도 구분 조사한다. 선철, 강반성품, 강괴, 나동선, 흑철선

산업소분류 372 제1차비철금속산업

(1) 알미늄 주물제품과 프레스(압연) 제품이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이며 프레스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철을 한다. (알미늄판으로 만듦)

산업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및장비제의)

- (1) 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므로 생산품이 월별로 달라지는 사업체가 있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품목이 생산되면 빠짐없이 확인 조사한다.
- (2) 힘마, 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시키며 송곳은 제외한다.
- (3) 농업용 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삽, 괭이, 호미, 정기, 쇠스랑 등) 정기에 있어서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벗과 보습을 한쌍으로 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곡괭이도 농업용 수공구에 포함한다.
- (4)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곤로와 분류되어야 하고 스토브(난로)만 조사되며 곤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결용으로 생산된 것 (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 (5) 방열기(라지에타) 중에는 콘베터, 월, 히터 등 몇가지 종류가 있으나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라지에타(실내 스팀용)만을 "매"로 조사한다.
자동차용방열기는 구분조사한다.
- (6) 건축용 샷슈는 단위를 "kg"으로 조사한다.
- (7) 알미늄프레스제품(식기 및 용기)과 알미늄주물제품(주물을 부어서 만든 것)은 구분 조사한다.
- (8) 스테레스스틸제 식기에서는 한식기(밥그릇, 주전자, 신선로등)와 양식기(폭크, 스푼, 나이프 등)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9) 쇠뿔에서는 철선으로 만든것은 모두 포함시키거나 나사뿔, 황동뿔, 나무뿔 등의 특수뿔은 제외한다.
- (11)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며 가시철망(유자철선

철조망), 스토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P.V.C를 입힌 유리내용품 등은 제외한다.

- (11) 볼트 및 너트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와사 리벳트 등은 제외한다.
- (12) 금고는 서류나 돈의 보관용으로 만든 대형 금고만이 조사 대상이며 어린이저금통 및 임시 보관용인 수제금고는 제외시킨다.
- (13) 금속관 이음쇠에서는 리벳트는 제외된다.
- (14) 흑철선도 마찬가지로 흑철선으로서 쇠못을 만들거나 아연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가단주철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또한 흑철선에는 경강선 PC강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 된 ACSR (알루미늄선) 진유선 등은 제외한다.
- (15) 나동선의 경우 일차제품으로 나동선을 만들어 케이블선, 합성수지 피복선, 면선,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의하여 자가소비량과 출하된 양을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6) 공업용 보일러는 석소날 보일러와 공업용 보일러로 구분 조사하며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시킨다.

산업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 (1) 공업용 보일러, 발전기, 동력탈곡기 등 기계제조업에 있어서는 특히 수리와 생산을 엄밀히 구분 조사한다.
- (2) 발전기는 석유 및 경유발전기만 조사한다.
- (3) 디젤기관에는 농업용 디젤기관 디젤발전기까지 포함되나 수송용

- (선박용디젤기관과 자동차엔진)은 분리 조사되고 있으므로 경운기 부착용 디젤엔진과 디젤발동기 등은 디젤기관으로 조사한다.
- (4) 인력탈곡기는 반드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5) 분무기는 농업용 등짐식 어깨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분무기와 족담형 등 농업용을 조사하여 곤충(파리, 모기)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가정용림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것 스프리건 등은 제외 한다.
- (6) 절삭공구 조사시는 공구의 명칭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쇠틀들 줄 등은 공장용 수공구로 조사하고 쇠틀날과 유리칼혹은 목공용 칼날은 제외한다.
- (7) 선반, 압축기, 프레스기는 수리품과 생산완제품을 구분 조사하고 적요란에 용도, 모양,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토록 한다.
- (8) 증광과 샷들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 (9) 정미기 및 정맥기에는 현미기, 제분기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10) 활판인쇄와 옵셀인쇄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11) 동력림프에는 자동식 림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림프(우물용)는 제외한다.
- (12) 엘리베이터 ()는 탑승용만 해당되며 화물용은 제외된다.
- (13) 재봉틀 조사시는 다이까지 포함된 완제품을 원칙으로 하나 재봉틀 두(머싱수)만 생산하더라도 완제품으로 간주 조사한다.
- (14) 밭보는 건축용 기계용 농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밭보 가이드 엔진밭보, 타이어 튜브밭보 및 수도꼭지는 제외된다.

- (15)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프라스트베어링 등 전부를 포함하며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 조인트 등은 구분조사 하여야 한다.
- (16) 기어 (톱니바퀴)는 순수한 톱니바퀴만 조사하고, 완제품으로서의 자동차 제동장치인 기어는 제외한다.
- (17) 압연기롤에서 칠드롤이나 철강 압연용롤은 조사하여야 하나 곡물분쇄용 고무롤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1) 변압기의 조사 지정단위는 KVA이며 대(台)로 조사될 때에는 KVA로 환산하여 보고하고 수리품은 제외한다.
송 배전용 및 기계용 등 강전용(強電用) 변압기만 조사대상이 되며 계기용 변압기 등 약전용(弱電用)은 제외한다.
- (2) 전동기의 조사 지정단위는 HP이나 대(台)로 조사될 때에는 대당용량을 조사하여 환산할 것이며 수리품은 제외된다.
- (3) 백열전구는 15W이상의 조명용으로 대표되는 제품의 규격을 반드시 명시한다.
- (4) 라디오에 있어서는 카(Car) 라디오와 일반라디오(트랜지스터라디오, 사계부착라디오, 기타 라디오 포함)로 구분 조사한다.
- (5) 트랜지스터는 소형 라디오가 아니며 트랜지스터용 라디오등 전기 제품 부속의 일종이다.

- (6) 고압축전기는 조사 지정 단위가 KVA이고 저압축전기는 mF 이다.
- (7) T.V수상기는 칼라TV를 구분하고 규격 란에 그 크기 (인치수) 를 명시하여야 한다.
- (8) 전화기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 뿐만 아니라 수출용인 장식용 전화기도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단, 인턴폰이나 무전기 등은 제외 된다.
- (9) 자동식전화교환기의 조사 지정 단위는 " 회선 " 이고 수동식전화교환기는 " 대 " 이다.
- (10) 전기냉장고에 있어서 아이스박스나 냉동기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용량별로 구분 조사할것.
- (11) 콘덴서는 고정콘덴서 (전해콘덴서 , 세라믹콘덴서 , 플라스틱콘덴서 , 오일콘덴서 , MP콘덴서 , Mica (운모) 콘덴서 등) 와 가변콘덴서 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단위는 천개로 한다. (M/P 로 조사하지 않것)
- (12) 저항기는 가변저항기와 고정저항기와 반드시 구분조사할것 (단위는 천개로 한다)

산업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 (1) 철강화물선 목조어선 등의 수리품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철강화물선 철강유조선, 철강어선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며 냉동선, 부선토운선 등 철강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2) 자동차스프링은 의자 (시트) 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을 조사하되 코일형 스프링과 증판스프링으로 구분조사한다.

(3) 리어커링은 자전거링에서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85 달력분류되지않은신문,과학,추경및제약장비약품및 광학제품,
390 기타 제조업

- (1) 손목시계, 패종시계, 손목시계케이스, 탁상시계 등을 각각 구분 조사한다. 단, 특수형시계(잠수기록용), 전기전자시계(옥의설치용)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전자손목시계와 손목시계는 구분하여 조사함. 전자력시계는 패종시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2) 연필의 단위 환산: 12자루=1타(打), 12타(打)= 1 Gross
= 144 자루
- (3) 정돈모는 반드시 kg으로 환산 조사 한다.
- (4) 정돈모 조사시에는 말털은 조사하지 않는다.
- (5) 인형은 천을 씌운 것만 조사한다. (프라스틱인형, 목각인형, 트로피인형, 각종 알미늄인형은 조사하지 않는다.)
- (6) 쌍안경은 완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장난감)은 조사에서 제외 한다.
- (7) 울겐에서 전자울겐은 제외하여야 한다.
- (8) 기타에서 전자키타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9) 쥘퍼(작코)는 단위가 사업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로 환산한다. 단위환산이 곤란할때는 원재료 사용량으로 환산함을 참고한다.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

- (1) 의약품, 의복제조업, 등의 조사만을 # 데프레이터 #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계속 조사한다.

- (2) 제조업의 가격조사는 지정된 단위,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3) 판매가격 등락의 요인을 적요란에 꼭 기입하여야 하며 요인은 생산비(원료·임금)와 수요 및 공급, 그리고 기타의 여건 등 상세하게 분석을 하여야 한다.
- (4) 판매가격 산출은 공장도출하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세, 유류세 등 기타 제세금을 포함시킨 가격이며 정상거래를 전제로 한 가격만 조사한다.
- (5) 수출가격은 F.O.B가격을 조사하며 반드시 달러로 조사한다.

고용 및 급여

- (1) 임시 종업원은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토록 할 것.

또한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는 기입에 착오없도록 할 것.

- (2) 월 중 연근무인원수는 일일종업원수의 누계인데 일반적으로 월말 종업원 수에다가 조업일수를 곱해주고 있는데 이는 편법하므로 인사 및 경리취급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실제 연근무인원수를 조사토록 한다.
- (3) 고용 및 급여액에 차가 있을 경우 변동요인을 비교란에 기입하는데 추석보너스, 김장보너스, 기별보너스, 정기급여인상, 능률급 지급 등을 기입한다.

원재료, 연료 및 동력

- (1) 원재료 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제품조사의 그것에 준하여 조사한다.
- (2) 면사: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 (3) 소모사: 순소모사, 혼방 소모사를 포함
- (4) 화학섬유사: 합성섬유방적사, 재생섬유방적사, 아세테이트사, 혼방합성섬유방적사, 어망사, 화학섬유 연사를 포함
- (5) 면직물: 순면직물만 조사
- (6) 화학섬유직물: 재생섬유직물, 순 합성섬유직물을 조사
- (7) 혼방직물: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합성직물 포함
- (8) 특수강: 철강은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며, 탄소강중에서 고탄소강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한다.
용도별로는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을 말하며 각종절삭공구, 베어링, 스프링과 같은 기계의 특수부품, 그리고 피아노선용접봉심선 자석 등에 사용된다.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라도 규소강판, 스테인레스판과 같이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9) 황동: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돛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괴(塊), 판(板), 봉(棒)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10)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박은 제1차 비철금속제품의 알루미늄 박판을 말한다.

(0.2 mm미만)

- (11) 알루미늄 판 중 알루미늄박은 제외한다 (0.2 mm 이상)
- (12) 인칭동판 : 동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 (10~15%) 과 주석 (3~7%) 이 합금된 철판
- (13)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시킨다.
- (14) P.C.B원판 (Printed Circuit Board) : 트랜지스터나, T.V 등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스 (earth) 역할을 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 m × 1 m 인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15) 강반성품은 스퀘어, 리벳트 (Sheetbar), 브롬, 핫코일 (Hot coil) 을 포함한다.

부록Ⅱ . 광공업동태조사지정 품목분류

- (1) 이 분류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을 산업소분류별로 게재하고 있다.
- (2)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두 가지 단위(,)로 기입된 품목은 반드시 두가지 단위에 따라서 병행 조사 보고해야 한다.
- (3) 그 사업체가 소속하는 산업소분류의 대상 품목 전부를 검토하여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해당되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
- (4) 그 사업체의 주요 제품을 이 분류표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종전과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또는 이 분류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기입하되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 가정용 전기세탁기라 기입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가정용 전기기계와 같이 기입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 (5)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한란에 결합하여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예 :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이들을 각각 판란에 기입한다. 「간장 및 된장」이라 하여 한란에 기입하면 안 된다.)
- (6) 플라스틱 제품(223)은 **밖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식기 및 용기

(223-1, $\frac{1}{4}$), 신 (223-2, 천족), 필립 (223-3, $\frac{1}{4}$), 파이프 및
관 (223-4, $\frac{1}{4}$), 레저 (223-5, m^2) 으로 구분 조사한다.

(7)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 :그램 (gram)

kg :킬로그램 (=1,000 g)

$\frac{1}{4}$:메트릭톤 (=1,000 kg)

S/T :쇼트톤 (=907 kg)

HP :마력

G/A :갈론 (gallon)

m :미터 (meter)

m^2 :평방미터 (가로와 세로가 각 1 m인 넓이)

m^3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 m인 부피)

S/F :스퀘어 피트 (Square feet)

ℓ :리터 (liter)

kl :킬로리터 (=1,000 ℓ)

G/T :그로스톤 (용적톤 100 f³ =1 G/T)

KVA :키로볼트암페어 (Kilo Volt AmPere)

mf :마이크로 파라드 (micro farad)

가.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 광 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10. 석탄광업			
001	무 연 탄	%	※ 광업조사표는 판매처를 필히 기입할 것 청청하고 크기도 고르고 선별 할것 (접착제없이 응집한것은 포 합하나, 접착제로 만든것은 제외) (기준열량 4800~5000 cal)
중분류 23. 금속광업			
230. 금속광업			
002	철 광 석	%	Fe56% (석철광, 자철광, 갈철 광, 기타철광)
003	중 석 광 석	%	W ₃ 70% (흑중석, 회중석, 기 타중석)
004	금 광 석	g	Au99.9% 금괴
005	은 광 석	g	Ag99.9% 은괴
006	동 광 석	%	Cu15% (회동광, 황동광, 반동 광, 남동광, 공작석등)이며 동매 트 (Copper Matt는 제외)
007	연 광 석	%	Pb50%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 광, 기타연광)
008	아 연 광 석	%	Zn50% (섬아연광, 홍아연광, 탄 산아연광)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09	몰리브데넘광석	kg	MoS ₂ 90% (취수연포함)
중분류 29. 기타광업			
290. 기타광업			
010	석 회 석	%	CaO 50%
011	모 래	m ³	건설용 및 산업용모래 (금속함유 모래는 제외)
012	자 갈	m ³	
013	고 령 토	%	SK#34 (백토포함)
014	납 석	%	SK#32 (실화석고의 일종으로 조각용연성왁스질의 광물)
015	형 석	%	CaF ₂ 80% (천연방정석, 치오라이트 (Chiolite) 포함)
016	인 상 후 연	%	FC 75%
017	토 상 후 연	%	FC 75%
018	활 석	%	기준품위 없으며 각급으로 조사
제 조 업			
중분류 31. 음식료품및 담배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019	쪄 세 지	kg	
020	연 유	kg	청정유 및 시유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021	분 유	kg	물트우유포함 (청정유및시유제외)
022	아 이 스 크 림	ℓ	하드류 제외
023	체 리 우 유	kg	시유 (목장우유)를 말한다 (비타민 미네랄염등이 첨가된것 포함)
024	유산균발효유	kg	
025	농산물통조림	ℓ	
026	해산물통조림	kg	(꽂치, 고등어, 연어, 바다동물고기등 수산물통조림)
027	냉동해산물	ℓ	빙장, 냉장 및 원양어선에서 제조된 냉동물체외)
028	대 두 유	ℓ	
029	마 가 린	ℓ	
030	쇼 팅	ℓ	
031	밀 쌀	ℓ	
032	밀 가 루	ℓ	관, 민수용 포함조사
033	식 빵	kg	밀가루빵, 그루레빵, 우수수빵, 맥아빵 등 각종식빵 (생과자, 케이크, 파이등제외)
034	건 빵	kg	
035	건 과 자	kg	비스켓, 크래커, 쿠키만조사
036	라 면	ℓ	
037	정 당	ℓ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38	실 탕 과 자	kg	초코벨, 드롭프스, 제리, 캔디등의 과자 유과 다식제외)
039	겜	kg	
421	축 산 물 통 조 립	kg	
422	된 장	kg	
423	인 공 감 미 료	kg	
040	인 조 열 음	kg	
041	간 장	kg	
042	놀 루 타 민 산 소 다	kg	
043	녹 말 가 루 (전분)	kg	옥수수, 밀, 쌀, 감자, 마니옥, 칩뿌라 등에서 추출된 녹말가루 수전분제의
044	식 용 포 도 당	kg	
045	물 엿	kg	(엿 제외)
046	분 말 커피	kg	(원두커피제외)인스턴트커피만 포함
047	분 말 인삼	kg	
048	이 스탁	kg	생이스트 드라이이스트포함
049	배 합 사 료	kg	화학사료제외
313	음료품제조업		
050	주 정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51	소 주	kl	
052	탁 주	kl	
053	청 주	kl	합성청주포함
054	포 도 주	kl	디저어트포도주, 탄산포도주, 향미포도주포함
055	맥 주	kl	합성맥주포함
056	사 이 다	kl	
057	콜 라	kl	
058	쥬 스	kl	사이다, 콜라의외의 청량음료 분말쥬스 제외
424	누 륵	kg	
425	엿 기 림	%	
314	담배제조업		
059	필터달린담배	백만본	
060	필터없는담배	백만본	
061	자 연	%	
426	채전조양담배	%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62	생 사	kg	
063	면 사	%	면혼방사포함
064	방 모 사	kg	수모방적사제의
065	순 소 모 사	kg	수모사제의
066	혼 방 소 모 사	kg	
067	합성섬유방적사	%	filament 사 포함
068	제 생 섬 유 방 적 사	kg	아세테이트사제의
068-1	아 세 테 이 트 사	kg	
069	혼 방 합 성 섬 유 방 적 사	%	
070	견 방 사	kg	견방적사, 전사 (견수방사, 주방사 포함)
071	화 학 섬 유 연 사	kg	재용사, 편물사중 화학섬유연사만조사
072	담 요	m	
073	타 울	kg	위생용타울, 개면타울, 목욕타울, 해수욕타울 포함
074	화 석 사 양 말	천 족	화석 60% 이상양말, 팬티스타킹, 타이즈 포함 (면, 모양말 제외)
075	매 리 야 스 내 의	매	동내의 포함
076	매 리 야 스 외 의	매	편물외의 (재단재봉한것 제외)
077	로 우 프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078	어 망 사 (연승)	kg	연사하지 않은 어망사용설 제외
079	어 망	kg	
080	면 직 물	천 m	면혼방직물제외
081	순 소 모 직 물	m	all Wool로 된 소모직물
082	방 모 직 물	m	90% 이상모를 사용한 방모직물
083	모 혼 방 직 물	m	
084	순 본 견 직 물	m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리원단, 쓰무기원단등 포함
085	견 혼 방 직 물	m	
086	순 합성섬유 직 물	천 m	
087	혼방합성섬유직물	천 m	
088	재생 섬유 직 물	천 m	
089	휠 터	kg	
090	타 이 어 코드 사	%	
427	천 막	개	
468	아 마 사	kg	
322 의복 제조업 (신발 제외)			
091	의 부 류	천 원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092	소 가 죽	m ²	
093	비닐레트링크 (가죽포함)	개	피혁, 합성피혁, P.V.C로만든제품만조사
094	핸 드 백	개	피혁, 합성피혁 P.V.C로만든제품만조사 (학생용, 여행용가방, 구슬백은 제외)
428	기계용 가죽 벨 트	m/Ply	
324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외)			
095	남 자 용 가 죽 신	족	소아용가죽신제외 (육군단화포함)
096	여 자 용 가 죽 신	족	소아용가죽신제외
097	군 화 및 가죽장 화	족	가죽으로된목이진신, 장갑화, 작업화, 등산화, 골프화, 가죽부츠등을 포함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 조 업 (가구 제외)			
098	가 제	m ²	소할재 제외
099	판 제	m ²	소할재 제외
100	장 지 문	개	대문은 제외
101	합 판	m ²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02	재 생 목 재	㎡	파아티클보드, 칩보드포함
332 가구 및 장식품 제조업 (금속가구제외)			
103	장 능	개	찬장 및 대형서가 (Book case)포함
104	식탁 (상포함)	개	
105	화 장 대	개	
106	의 차	개	
107	책 상	개	탁자, 티데이북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08	쇄 목 필 프	%	
109	화 학 필 프	%	
110	신 문 용 지	%	
111	백상지 (모조지)	%	
112	증 질 지	%	갱지, 그라비아용지, 로루지등 각종 인쇄 및 필기용지
113	아 트 지	%	
114	크 라 프 트 지	%	
115	갈 포 벽 지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16	창 호 지	권 (2,000매)	
117	화 장 지	kg	
118	박 엽 지	kg	
119	판 지	kg	
120	골 판 지	kg	라이나원지 (A.B.K원지) 중심원지포함
121	골 판 지 상 자	천 m ²	
122	크 라 프트 지대	천 매	시멘트, 말가루, 설탕포대, 사료등의 종이포대
123	판 지 상 자	m	접어서 만든 판지상자와 짜맞추는 판지상자
124	벽 지	m	링크러스타 (Lincrusta) 포함
125	금 속 박 지	kg	
126	권 연 지	kg	
429	장 판 지	m ²	
430	인 화 지	kg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127	일 간 신 문	천 부	
128	비 일 간 신 문	천 부	
129	정 기 간 행 물	천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30	서 적	천 권	
131	노 트	천 권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등제의
132	앨 범	권	출업앨범류 사진인쇄앨범제의
133	일반 인쇄물	연	
중분류 3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 플라스틱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제조업			
134	에 티 렌	kg	
135	프 로 피 렌	kg	
136	부 타 디 엔	kg	
137	싸이 크로 액 산	kg	
138	벤 젠	kg	
139	토 루 엔	kg	
140	키 시 렌	kg	
141	V C M	kg	염화비닐모너머
142	메 타 놀	kg	나무나프타 (조메틸알콜) 는제의
143	호 루 마 란	kg	
144	스 테 아 린 산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45	무 스프탈산	%	
146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로니트릴클리어및코폴리퍼는제의
147	카프로락담	%	
148	염 산	%	5%로 환산할것
149	황 산	%	98%로 환산할것. 발열황산인 올레움 (oleum) 포함
150	가성소다	%	100%로 환산할것
151	소다회	%	
152	산화티타늄	%	
153	암모니아	%	
154	카바이드	%	
155	암축산소	m ³	
156	아세틸렌개스	kg	
157	염료	kg	
158	유안비료	%	
159	요소비료	%	
160	용성인비	%	
161	용과린	%	
162	복합비료	%	규산질비료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63	살 총 제	kg	
164	살 균 제	kg	
165	제 초 제	kg	
166	S B R	%	NBR 제외
167	요 소 수 지	kg	
168	폴 리 에 칠 렌 (F. E)	kg	
169	폴 리 프 로 피 렌 (P. P)	kg	
170	폴 리 스 타 렌 (P. S)	kg	
171	P V C	kg	
172	세 로 판 지	kg	
173	아 세 테 이 트 섬 유	kg	아세테이트 Tow 포함
174	나 일 론 섬 유	%	나일론 Staple Fiber 포함 나일론 Staple Top 포함
175	폴 리 에 스테 러 섬 유	%	폴리에스테르 Staple Fiber 포함 폴리에스테르 Staple Top 포함
176	아 크 릴 릭 섬 유	%	아크릴릭 Staple Top 포함 아크릴릭 Staple Fiber 포함
469	알 킬 벤 젠	%	
431	아 세 트 알 데 히 드	%	
432	가 소 제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433	규 산 질 비 료	%	
434	메 라 닌	%	
435	비스코스 섬 유	%	
436	포리프로피렌섬 유	%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177	바 니 스	ℓ	
178	락 카	ℓ	
179	에 나 멜	ℓ	
180	유 성 페 인 트	ℓ	
181	수 성 페 인 트	ℓ	
182	의 약 품	백만원	
183	세 탁 비 누	%	분말세탁비누포함
184	화 장 비 누	kg	
185	글 리 세 린	kg	
186	세 탁용합성세 제	%	고형세제포함
187	치 약	kg	치분제의
188	화 장 수	kg	밀크로션제의
189	화 장 크 림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90	화 장 백 분	kg	화운데이손과 몸매바르는분 제외
191	머 릿 기 림	kg	포마드, 헤어오일, 헤어크림포함조사
192	다 이 나 마이트	kg	
193	초 안 폭 약	kg	초유폭약제외
194	도 화 선	km	도폭선 제외
195	뇌 관	천 개	공업뇌과, 전기뇌관 포함
196	성 냥	천 갑	가정용 덕용 대형기준
197	카 본 블 록	%	순수탄소 포함
198	인 쇄 잉 크	kg	
199	향 료	kg	화장품향수제외
437	활 성 탄 소	kg	
438	점 착 체	%	
353. 석유정제업			
200	젯 트 유	kg	제트기엔진 및 항공기터빈기엔진용
201	휘 발 유	kg	
202	나 프 타	kg	
203	등 유	kg	
204	경 유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05	충 유	ℓℓ	방카 C유제외
206	방 카 C 유	ℓℓ	
207	윤 활 유	ℓℓ	구리스, 식물성윤활유 제외
208	액 화석유개스	ℓℓ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209	각 종 연 탄	℥	
210	코 크 스	℥	패코크스 분코크스
211	아 스 팔 트	ℓℓ	
439	루 평 지	kg	
355. 고무제품 제조업			
212	자동차용타이어	본	
213	자전거용타이어	본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제외
214	자동차용튜브	본	
215	자전거용튜브	본	모터싸이클용튜브 제외
216	재 생 타 이 어	본	
217	고 무 신	천 족	
218	고무장화및우화	천 족	
219	운 동 화	천 족	훈련화(통일화), 노동화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20	고 무 호 스	m	
221	자 중 고무 벨트	천 Ply	
222	스 폰 지	m ²	합성수지스폰지 제외
356. 달리분류되지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3	플 라 스 틱 제 품	%	
223 - 1	플라스틱제식기및용기	%	
223 - 2	플라스틱제 신	천 족	
223 - 3	플라스틱제 필름	%	
223 - 4	플라스틱제 파이프 및 관	%	
223 - 5	플라스틱 레저	m	
223 - 6	기타 플라스틱제품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361. 도가, 자기 및 토기제조업			
224	도 자 식 기	천 개	토기제품 제외
225	위 생 도 기	개	(건물내에 영구히 고정시키는)
226	고 압 애 자	개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욕조만조사 3300 V 이상
227	저 압 애 자	개	3300 V 미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28	판 유리	상 자	
229	유 리 술 병	천 개	화장품병, 식초병, 간장병, 꽃병, 니스병 제외
230	유 리 약 병	천 개	농약병 제외
231	유 리 식 기	천 개	새 족잔, 양주잔, 소주잔, 재털이와 유리문구용품(잉크병, 잉크스탠드등) 제외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2	벽 돌 (소 성)	천 매	흙을구워서만든벽돌(오지벽돌포함) 기준규격 1매 = 2.5kg
233	타 일	m ²	오지타일, 내장타일, 외장타일 모자 익타일 포함조사(판석제외)
234	내 화 벽 돌	㎡	330매 = 1㎡ (# S, K32)
235	내 화 물 탈	kg	
236	포오톨란드시멘트	㎡	
237	백 시 멘 트	㎡	
238	소 석 회	㎡	생석회, 수경성석회 제외
239	콘크리트블록	천 매	
240	콘크리트벽돌	천 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41	콘 크 리 트 판	본	
242	흙	관 본	
243	콘 크 리 트 전 주	본	
244	콘 크 리 트 파 일	본	
245	콘 크 리 트 기 와	천 매	
246	레 미 콘	m ³	
247	서 면 스 레 트	천 m ²	

중분류 37. 제 1 차금 속산업

371. 제 1 차 철강산업

248	선	철	%	재생선철 제외
249	합 금	철	%	망강철, 규소철, 크롬철, 몰리브덴합철, 니켈철, 규소망강철, 텅크스텐철, 티타늄철등
250	강	괴	%	압연용 및 단조용의 보통강괴, 고탄소강괴, 합금강괴
1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51	강 반 성 품	%	스라브, 브롬, 비엣, 슈트바, 핫코일, 대강등을 포함
252	주 강	%	용강을 최종목적제품의 형태로된 주형에 주입하여 제조한 강제품 (보통 고탄소합금강 주강포함)
253	봉 강	%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월강 포함
254	철 근	%	이형철근, 원형철근 포함
255	형 강	%	(angle) (channel) 산형강 구형강 L형강 H형강, T형강 I-빔
256	층 후 판	%	3mm 이상
257	박 판	%	3mm 미만
258	선 재	%	CBAR IN COLL 포함
259	강 관	%	단형, 타단형, 각형으로 내부가 비어 있는 것 (무계목, 단접, 전봉, 전호용접)
260	주 철 관	%	직관, 이형관 (십자관, T자관, Z자관 곡관, 단관) 주물용선철로 제조 내부가 비어 있는 것
261	가 단 주 물	%	C ₂ 의 함량이 적고 저탄(P)저유황 및 0.2~0.5% M ₂ 을 함유하는 것 (표면이 흰회색)
262	기 계 용 주 물	%	철제가마솥, 화로, 절구등 제외
263	석 도 철 판	%	전기도금 석도강판, 열지도금 석도강판
264	아 연 도 철 판	%	(평판, 파판포함) 전기도금, 열지도금
265	와 이 어 로 프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66	쇠 못	%	
267	후 철 선	%	아연도철선, 경강선 P.C강선구분 (알미늄선, 전유선 제외)
267-1	경 강 선	%	
267-2	P.C 강 선	%	
440	스텐레스스틸 판	%	
372. 제1차 비철금속산업			
268	전 기 동	kg	동쇼트, 해감봉등 제외
269	알 미 늄 껍	kg	
270	연 껍	kg	
271	아 연 껍	%	
272	은	g	
273	금	g	
274	동 판 및 관	kg	단동, 황동, 청동판 및 관포함
275	알 미 늄 판	kg	알미늄박 및 띠 제외
276	나 동 선	%	직경 6mm미만
277	알 미 늄 주물제품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278	공장용 수 공 구	개	합마, 드라이버포함 (송곳제외)
279	농업용 수 공 구	개	금속제만 조사 (삼, 곡괭이, 괭이, 호미, 쟁기, 도끼, 포크, 괄두, 낫, 전지가 등)
280	철 제 캐 비 넷	개	화일박스 제외
281	철 제 의 자	개	틀이 금속으로된 회전 의자 및 침대결음 의자 포함
282	철 제 책 상	개	철제 탁상 (타자기용 탁상) 등 제외
283	전물용 문 및 수 문	개	샷터, 덧창, 창틀 제외
284	건축용 샷 슈	kg	샷슈바 제외
285	보 일 러	대	가청용보일러는 제외
286	통 조 립 용 관	천 개	미술관 (과자캔, 설탕캔, 우유캔 등) 제외
287	드 렘 관	개	200ℓ 이상 용기만 조사
288	알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	kg	주물제품은 알미늄주물제품 (277) 의 로 조사할 것
289	스텐레스스틸제 식기	kg	한식기와 양식기로 구분조사
290	방 열 기	매	중앙난방용방열기만조사 (콘벡터, 윌 히터, 자동차용방열기 (연소가부러진것제외))
291	자 동 차 용 방 열 기	개	
292	석유 스토브	개	콘로겸용은 포함 (콘로는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93	볼트 및 너트	%	와셔, 리벳트 등은 제외
294	금속판 이음쇠	kg	리벳트는 제외
295	철 사 망	kg	철조망, 스토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P.V.C입힌 유리대용등은 제외할것
296	금 고	개	어린이 저금통 및 임시보관용 수제금고 제외
297	자동차용코일스프링	개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 (의자, 시계 및 기타의 스프링제외)
298	자동차용중판스프링	매	
299	용 접 봉	%	연계체인과 주로 철판, 금속대, 철선으로 만든 메트레스체인, 싱크스토퍼 체인, 동력 전달체인등만 조사함(모조장산구 체인은 제외)
300	체 인	kg	
441	철 제 칩 대	대	
442	샷 터	m ³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301	내 연 기 관	HP	석유, 알콜, 가스등을연료로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전화용 내연기관만 조사하고 선박및 차량용은 제외(발동기와 다웰기관을 내연기관으로 조사한다)
302	동 력 탈 곡 기	대	
303	경 운 기	HP	(소형분무기(가정용), 스프리건제외) 농업용 분무기만 조사
304	분 무 기	대	
304-1	동 력 분 무 기	대	
304-2	인 력 분 무 기	대	
304-3	동 력 살 분 무 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05	농업용트랙터	대	
306	선 반	대	나사선반, 터렛선반, 카핑선반등 포함
307	프레스기	대	유압식프레스기 및 샤링기, 편칭기, 노칭기
308	압출기	대	벤딩기, 압출프레스기, 인반기, 금속스피닝 포함
309	압연기	대	철드나 철제압연용틀포함. 곡물분쇄용 고무틀 제외
310	절삭공구	개	금속공장용절삭구만조사하고 나무공작용 및 기타재료공작용 절삭구는 제외
311	연사기	대	합사기는 제외
312	직기	대	각종직물을 짜는 직기를 포함
312-1	면직기	대	
312-2	견직기	대	
313	편직기	대	횡편직기와 환편직기 제외한 기타 편직기만 조사
313-1	횡편직기	대	
313-2	환편직기	대	
314	종광	천 개	
315	샷틀	대	직기의 북
316	정미기	대	현미기, 압맥기, 제분기등 제외
317	정맥기	대	
318	활판인쇄기	대	평압식인쇄기와 원통압식인쇄기만조사하고 석판인쇄기, 움셋인쇄기, 그라비아인쇄기, 특수인쇄기등은 제외한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19	전 자 계 산 기	대	
319-1	탁상용전자계산기	대	
319-2	휴대용전자계산기	대	
320	타 자 기	대	사무용타자기, 전동타자기, 공판타자기 휴대용타자기를 포함
321	동 력 펌 프	대	자동식펌프, 양수기 포함 (수동식펌프 제외)
322	공 기 압 축 기	대	
323	호 이 스 트	대	
324	크 레 인	대	capacity ton을 조사 이동식크레인, 정지형크레인, 교량형크레 인, 갠트리크레인등 (Gantry) 포함
325	엘 레 베 이 터	대	화물용은 제외
326	가 정 용 재 봉 틀	대	가정용손틀, 발틀, 전기식 재봉기
327	공 업 용 재 봉 틀	대	직물용재봉기, 가죽용재봉기, 포대봉합적 재봉기등산업용에쓰이는 재봉틀을 포함
327-1	일 본 칩 직 선 본 봉 재 봉 틀	대	
327-2	오 바 로 크딴인 타 로 크 재 봉 틀	대	
327-3	기타공업용재봉틀	대	
328	기 어	개	자동차제동장치인 기어제외
329	베 어 링	kg	롤베어링, 볼베어링, 니들롤러베어링 포 함 자동차등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기 나버살조인트 제외
329-1	볼 베 어 링	kg	
329-2	로 울 러 베 어 링	kg	
329-3	메 탈 베 어 링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30	패케이지형에어콘 더 쇼 너	대	대형자장 공기조절 에어컨
331	원도우형에어콘 더 쇼 너	대	룸에어콘만조사하고 (차량용에어콘 (카를러) 제외)
332	자동차용피스톤	개	산업용피스톤은 제외할것
333	발 브	개	건축용, 기재용, 공업용만포함조사 (자 동차부속용발브, 타이어튜브발브, 수도꼭지는제외)
443	발 동 기	대	석유용만 조사할것
444	인 력 탈 곡 기	대	
445	염 색 기	대	
446	열 교 환 기	대	
447	연 탄 제 조 기	대	
448	콘 배 어	대	
449	송 배 풍 기	대	
450	스 핀 들	개	직기부품
451	링	개	직기부품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34	전 동 기	HP	전기모터를 말하며 내연기관용 전동기 제외
334-1	직 류 전 동 기	HP	
334-2	교 류 전 동 기	H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35	변 압 기	KVA	송배전용 및 기계용등강전용변압기만조사 (계기용변압기등 약전용 제외)
336	시 동 전 동 기	대	시동모타(기관에임시로연결시키도록 기계장치 가부착된소형전기모터(내연기관용으로통상적류)
337	고 압 축 전 기	KVA	전기산업의 여러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업기기를 위한 축전기
338	저 압 축 전 기	mF	전기산업의 여러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업기기를 위한 축전기
339	흑 백 TV수상기	대	
340	칼 라 TV수상기	대	
341	라 디 오 수 신 기	대	
341-1	일반용라디오수신기	대	시계부착라디오, 기타라디오 포함
341-2	카라 디 오 수 신 기	대	
342	전 축	대	앰프, 턴테이블, 플레이어, 스피커등이 조립되어 있는것
343	녹 음 기	대	카세트녹음기, 라디오부착녹음기 포함
344	화 성 기	천 개	헤드폰은 포함하나 전화기구는 제외
345	앰 프	대	특히전축과구분할것(앰프만 따로 출하되는것) 인터폰등에 사용되는 소형앰프는 제외
346	TV 튜 너	개	
347	전 화 기	대	수출용인 장식용전화기포함(인터폰이나 무전기등 제외)
347-1	자 동 식 전 화 기	대	
347-2	자 석 식 전 화 기	대	
347-3	공 전 식 전 화 기	대	
348	수동식전화교환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49	자동식전화교환기	회선	
350	브라운관	대	
350-1	흑백브라운관	대	수리품은 제외 T.V카메라용 음극선관 제외
350-2	칼라브라운관	대	
351	계수표시방전관	개	
352	다이오드	천 개	시그널다이오드, 전력정유다이오드, 전압 조정다이오드, 터널다이오드등 포함
352-1	겔마늄다이오드	천 개	
352-2	실리콘다이오드	천 개	
352-3	기타 다이오드	천 개	
353	집적회로 (I.C)	천 개	
354	트랜지스터 (T.R)	천 개	
354-1	겔마늄트랜지스터	천 개	
354-2	실리콘트랜지스터	천 개	
354-3	기타 트랜지스터	천 개	
355	가변저항기	천 개	
356	고정저항기	천 개	
357	가변콘덴서	천 개	전자기용으로 전자기용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사할 것
358	고정콘덴서	천 개	전자기용으로 전자기용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사할 것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59	기 역 소 자	개	
360	마 그 네 틱 헤 드	개	
361	레 코 드 판	매	
362	녹 음 테 이 프	개	녹음된 테이프 포함. 60분용기준 (30분용은 2개를 1개로 환산)
363	전 기 냉 장 고	대	가정용만조사 (아이스박스, 냉동기제외)
364	선 풍 기	대	환풍기, 제습기 제외
365	전 기 세 탁 기	대	가정용전기세탁기만 조사
366	전 기 스토브	대	식품가열용장치 제외
367	전 기 믹 사	대	
368	전 기 밥 솥	개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통 겸용은 전기밥솥으로 조사할것
369	전 기 보 온 밥 통	개	
370	통신선및통신용케이블선	kg	각종절연전화전신선및 전자선케이블선 조사
371	전력선및전력용케이블선	kg	각종전력용선 및 전력용케이블선 조사
372	백 열 전 구	천 개	
373	형 광 전 구	천 개	직판형광등, 환형형광등포함조사 (바온 사인, 가스방전관및구 (수은등) 헬륨, 알곤가스, 크세논등기타방전관 제외)
374	축 전 지	개	납산축전지와 알카리축전지 조사
375	건 전 지	천 개	불활성전지, 습전지, 농축전지, 카본전 극봉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452	정 류 기	대	
453	전 기 용 접 기	대	
454	무 전 기 (트랜시버)	대	
455	해	대개	
456	음 성 증 폭 기	개	
457	냉 동 기	대	
458	소 키 트	개	
459	발 전 기	kw/대	
460	배 전 반 면	면	
461	고 압 차 단 기	대	
462	저 압 차 단 기	대	
384. 운수 장비제조업			
376	선 박 용 내 연 기 관	HP	선박용 디젤기관+소속기관조사
377	철 강 화 물 선	G/T	철강유조선구분조사 (바지선 포함)
277-1	철 강 유 조 선	G/T	포획활동을 하지않고 가공활동만하는부
378	철 강 어 선	G/T	유생선공장선 및고래가공선포함조사 (수리품 제외)
379	목 조 어 선	G/T	" "
380	여 객 차 량	량	수하물차, 침대차, 식당차, 포함조사 (병원차, 좌수차, 검사차, 및 기타 특 수목적 차량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81	화 차	량	무개차 (곤도라) 평저차, 유개차, 유조차, 냉 장차 및 연계장차가 결합된 광산차도 포함
463	광 차	대	지하광산에서 조작하도록 설계된 기관차 (외부전력, 축전지전력, 내연기관으로가동)
382	완 중 기	개	전차 및 천정크레인의 운심, 강재의 바퀴포함 (압연제품, 제조물주강 (단조 및 주강품) 제외)
383	철 도 차 량 른	개	16인승미만 (Jeep 포함)
384	승 용 차	대	1 1톤이상 ~ 4톤미만
385	소 형 트 렉	대	2 4톤이상 ~ 8톤미만
386	중 형 트 렉	대	8톤이상
387	대 형 트 렉	대	16인승이상 25인승미만 (마이크로버스)
388	스 형 버 스	대	25인승 이상
389	대 형 버 스	대	
390	자동차용내연기 관	대	
391	자 동 차 른	개	
392	차 축	개	
393	자 전 거 차 체	대	
394	자 전 거 링	개	리어커링 제외
395	모 터 싸 이 클	대	모타스쿠터, 오싸이클골프차, 눈차 및 기타특수목적차 제외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및 광학제품제조업		
396	온 도 제	개	알루미늄 수온으로된 살내 및 실외온도계 (산업용온 도계, 금속온도계팽창, 압력온도계차기온도계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97	적 산 전 력 계	대	전력소비량측정계기, 단상및 다상교류 전계직류전산전류계포함 가스미터기 제외
398	수 도 미 터	개	
399	안 경 테	개	
400	복 사 기	대	청사진 복사기 제외
401	쌍 안 경	개	완구쌍안경 (어린이용) 제외
402	광 학 용 렌즈	개	안경렌즈 포함
403	손 목 시 계	개	
403-1	전 자 손 목 시 계	개	
404	벽 시 계	개	전자벽시계포함 [계기판시계 (옥외설치 용전기시계) 특수용시계 (예, 잠수기록용) 제외]
405	탁 상 시 계	개	전자탁상시계 포함조사
406	손목시계케이스	개	
464	사 진 기 (카메라)	대	
390. 기타 제조업			
407	피 아 노	대	
408	울 겐	대	전자울겐 제외
409	기 타	대	전자기타 제외
410	야 구 장 갑	개	스키용장갑, 검도용장갑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411	만 년 필	개	
412	블	천 개	
413	연 필	타	색연필 포함
414	철제우산및양산살 대	개	죽제품살대제외
415	가 발	천 개	
416	인 조 눈 섭	천 개	인조속눈섭 포함
417	라 이 타	개	
418	인 형	개	천을입힌 인형만조사 (목각인형 플라스틱 인형, 트로피인형, 각종 알미늄인형 제외)
419	작 크 (지 퍼)	m	프라스틱지퍼제외
465	나전칠기공예 품	개	
466	정 돈 모	kg	
467	냥 시 대	개	
4. 전 기 업			
420	총 발전량 및 판매량	천kWh	

나, 광공업동태조사 지정 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3	옥수수(가루 포함)	ㄱ
522	갱 목	ㄱ	704	녹말가루(전분)	ㄱ
778	목 약	ㄱ	705	원 당	ㄱ
대분류 3. 제조업			706	설 탕	ㄱ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707	소기름(우지)	ㄱ
311~312식료품 제조업			708	경 파 유	ㄱ
502	밀(소맥)	ㄱ	818	통조림관	천개
503	콩(대두)	ㄱ	313. 음료품제조업		
504	고구마	ㄱ	501	보리(대맥)	ㄱ
505	소맥피	ㄱ	502	밀(소맥)	ㄱ
506	탈지강	ㄱ	504	고구마	ㄱ
507	콩깻묵(대두박)	ㄱ	517	호프	ㄱ
518	당밀	ㄱ	518	당밀	ㄱ
519	생우유	ㄱ	701	보리쌀(정맥)	ㄱ
525	어개류	ㄱ	702	밀가루(소맥분)	ㄱ
702	밀가루	ㄱ	703	옥수수(가루 포함)	ㄱ
			704	녹말가루(전분)	ㄱ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06	설 탕	%	713	양 모 톱	kg
710	수 정	kl	714	면 사	kg
711	콜 라 원 액	l	715	소 모 사	kg
712	엿 기름 (맥 아)	%	716	방 모 사	kg
749	탄 산 가 스	kg	717	화 학 섬 유 사	%
780	향 료	kg	718	생 사	kg
790	유 리 병	천 개	719	면 직 물	m
314. 담배제조업			720	순 소 모 직 물	m
516	잎 담 배	%	721	순 방 모 직 물	m
738	은 박 지	kg	722	화 학 섬 유 직 물	m
740	휠 타	%	723	혼 방 직 물	m
중분류 32. 섬유·의복및가죽산업			726	파 학 필 프	%
321. 섬유제조업			752	카 프 로 락 담	%
508	원 면	%	768	폴리 에 치 렌 수 지	kg
509	누에고치 (잠 견)	kg	770	폴리 프로 피 렌 수 지	kg
510	지 부 양 모	kg	771	화 학 섬 유 (톱, 실, 화이버)	kg
511	세 칩 양 모	kg	772	S F 면	kg
512	아 마	kg	774	A. N 모 노 마	%
513	아 바 카	kg	775	에 치 렌 그 리 골	%
514	갈 저	kg	776	D . M . T	%
515	모 설	kg	899	T . P . A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322. 의복제조업			728	판 재	m ²
719	면 직물	m ²	729	합판	m ³
720	순소모직물	m ²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 출판 제조업		
721	순방모직물	m ²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22	화학섬유직물	m ²	521	원목	m ³
723	혼방직물	m ²	524	고치	%
724	소가죽	m ²	624	활석분	%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725	쇄목펄프	%
520	원피	매	726	화학펄프	%
724	소가죽	m ²	731	백상지	%
898	합성피혁	m ²	732	인쇄용지	%
324. 신발 제조업			733	크라프트지	%
724	소가죽	m ²	735	박엽지	kg
898	합성피혁	m ²	736	판지	%
중분류 33. 나무및 나무제품제조업			737	골판지	%
331. 나무및 나무와 골크제품 제조업			744	가성소다	kg
521	원목	m ³	751	유산반토	kg
758	호르마린	%	817	알미늄박	kg
332. 가구 및 건구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727	각재	m ³	730	신문용지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731	백 상 지	㉔	750	V . C . M	㉔
732	인 쇄 용 지	㉔	753	염 화 가 리	kg
734	아 트 지	kg	754	벤 제	kg
735	박 엽 지	kg	755	틀 루 엘	kg
784	인 쇄 잉 크	kg	756	키 시 렌	kg
중분류 35. 화학물과 화학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58	호 르 마 린	㉔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759	메 타 늘	㉔
614	유 황	㉔	766	요 소	kg
615	인 광 석	㉔	788	낱 사	kg
617	공 엽 염	㉔	789	코 크 스	㉔
618	석 회 석	㉔	792	생 석 회	㉔
741	황 산	kg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742	염 산	kg	706	실 탕	㉔
743	카 바 이 드	kg	707	소기름 (우지)	㉔
744	가 성 소 다	kg	709	아 마 인 유	kg
747	소 다 회	kg	710	수정 (에타놀)	kg
748	암 모 니 아	kg	738	은 박 지	kg
			741	황 산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42	염 산	kg	353. 석유정제조업		
744	가 성 소 다	kg	603	원 유	kg
745	규 산 소 다	kg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747	소 다 회	kg	601	무 연 탄	%
748	암 모 니 아	kg	355. 고무제품제조업		
754	벤 젠	kg	523	천 연 (생) 고 무	%
755	톨 루 엔	kg	714	면 사 (면 사 포)	kg
756	키 시 렌	kg	717	파 학 섬 규 자 (타이 어 코 드 사)	%
757	알 킬 벤 젠	kg	773	합 성 고 무	%
759	메 타 늘	%	781	아 연 파	kg
760	무 스프 탈 산	kg	782	산 파 티 탄	kg
761	염 료	kg	783	카 본 불 락	kg
762	그 리 세 린	kg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63	지 방 산	%	765	가소제 (DOE, DBP 등)	kg
764	스 테 아 린 산	kg	767	P . V . C 수 지	kg
766	요 소	kg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777	스 치 렌 모 도 마	kg	769	폴 리 스템 수 지	kg
779	초 안	kg	770	폴 리 프로 피 렌 수 지	kg
780	향 료	kg			
781	아 연 화	kg			
782	산 파 티 탄	kg			
790	유 리 병	천 개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13	모래	m ³
361. 도기·자기 및 토기제조업			618	석회석	%
612	점토	%	619	고령토	%
619	고령토	%	620	장석	%
620	장석	%	621	규사 및 규석	%
621	규사 및 규석	%	622	납석	%
627	석고	%	625	형석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6	석면	%
616	초석	%	627	석고	%
618	석회석	%	726	화학필프	%
620	장석	%	739	크라프트지대	천매
621	규사 및 규석	%	791	시멘트	%
625	형석	%	797	붕강 (철근포함)	%
628	백운석	%	802	철선	kg
629	파유리	%	중분류 37. 제1차금속 산업		
746	유산소오다(망초)	%	371. 제1차 철강산업		
747	소다회	kg	602	원로탄(코크스제조용)	%
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04	철광석	%
612	점토	%	608	망강광석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609	고 철	%	808	아 연 괴	kg
618	석 회 석	%	809	알 미 늄 괴	kg
789	코 크 스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793	선 철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94	강 괴	%	609	고 철	%
795	강판성품 (스라브리 트, 핫코일브룸대강종)	%	610	동 철	kg
798	중 후 판	%	611	알 미 고 철	kg
799	박 판	%	789	코 크 스	%
800	주 물	%	793	선 철	%
372. 제 1 차비철금속산업			796	형 강	%
605	동 광 석	%	797	봉강 (철근포함)	%
606	연 광 석	%	798	중 후 판	%
607	아 연 광 석	%	799	박 판	%
610	동 철	kg	800	주 물	%
611	알 미 늄 고 철	kg	801	선재 (와이어로트)	%
618	석 회 석	%	802	철 선	kg
789	코 크 스	%	803	강 판	%
806	전 기 동	kg	804	특 수 강	kg
807	연 괴	kg	806	전 기 동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7	연 피	kg	806	전 기 등	kg
808	아 연 피	kg	807	연 피	kg
809	알 미 늄 피	kg	809	알 미 늄 피	kg
810	황 동(놋쇠, 진유)	kg	810	황 동(놋쇠, 진유)	kg
811	알 미 늄 판	kg	811	알 미 늄 판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12	등 판	kg
816	동 선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19	용 접 봉	kg	816	동 선	kg
382. 기계제조업			819	용 접 봉	kg
609	고 철	%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610	동 설	kg	767	P. V. C 수 지	kg
789	코 크 스	%	798	충 후 판	%
793	선 철	%	799	박 판	%
796	형 강	%	802	철 선	kg
797	봉 강(철근포함)	%	804	특 수 강	kg
798	충 후 판	%	806	전 기 등	kg
799	박 판	%	807	연 피	kg
800	주 물	%	808	아 연 피	kg
801	선재(와이어로프)	%	809	알 미 늄 피	kg
802	철 선	kg	810	황 동(놋쇠, 진유)	kg
803	강 판	%	811	알 미 늄 판	kg
804	특 수 강	kg	812	등 판	kg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813	인 청 동 판	kg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814	규 소 강 판	%	810	황 동	kg
815	스 텐 레 스 판	kg	815	스 텐 레 스 판	kg
816	동 선	kg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817	알 미 늄 박	kg	526	인 모	kg
820	트 렌 지 스 터	천개	623	흑 연	kg
821	집 적 회 로	개	717	과 학 삼 유 사	%
822	브 라 운 판	개	767	P. V. C 수 지	kg
823	P. C. B 원 판	매	771	과 학 삼 유 (아세테이트로우)	kg
824	자석 (마그네트)	천개	802	철 선	kg
384. 운수장비제조업			803	강 판	%
796	형 강	%	810	황 동	kg
797	봉 강 (철근포함)	%	815	스 텐 레 스 판	kg
798	중 후 판	%	대분류 34. 전기업		
799	박 판	%	601	무 연 탄	%
800	주 물	%	787	방 카 C 유	kl
802	철 선	kg	※ <연료 및 동력>		
803	강 판	%	601	무 연 탄	%
805	대 강	%	785	경 유	kl
809	알 미 늄 피	kg	786	중 유	kl
819	용 첩 봉	kg	787	방 카 C 유	kl
825	트 램 스 및 손	개	901	전 력	천KWH
826	자 동 차 엔진	대			

다.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지정 품목 일람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22 의 복 제 조 업			
322-01	동양복 (마춤양복)	벌	순소모복지 사용 (제일모직 보통제품 사용)
322-02	하양복 (마춤양복)	벌	모혼방복지사용 (제일모직제품, 폴리에스터 60~62% 모 38~40%)
322-03	기 성 양 복	벌	모혼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62%, 모 38~40% 수출용원단사용) 상, 하의 4벌 (조끼불포함)
322-04	남 자 용 학 생 복	벌	파섬흑색 5호 (중, 고교생용)
322-05	와 이 셔 쓰	매	백색, 목둘레 15", 긴소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322-06	잠 바 (자켓)	벌	나일론 100%, 크기 (중), 성인용
322-07	마 춤 숙 녀 복	벌	모혼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 모 40%, 제일모직제품, 성인용 투피스)
322-08	기 성 숙 녀 복	벌	모혼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 모 40%, 수출용원단사용 성인용투피스)
322-09	부 라 우 스	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긴소매여자 성인용
322-10	가 죽 의 복 (남자용 자켓)	벌	100%소가죽, 지퍼 부착, 성인용크기 (중)
322-11	가 죽 의 복 (여자용 자켓)	벌	100%소가죽, 여자성인용, 크기 (중)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522 의 약 품 제 조 업			
352-01	신 경 계 용 약	100 T	아티반(정당 1mg), 네오마진(정당 2mg) 자을신경제 그린피아(정당 100mg)
352-02	해 열 진 통 제	상 자 100 T	1. 판피린 내복액(20ml 30병) 2. 사리돈, 오파이린, 바탈긴
352-03	호 흡 기 계 용 약	병 Ample	1. 지미산(150ml) 2. 오토테푸리제주 1cc × 10 Ample
352-04	순 환 기 계 용 약	100 T 2ml × 50 A	1. 에시드라의 스투게론 2. 네오휘린-엠주(Neophyllin-M)
352-05	소 파 기 계 용 약	100 T 병	1. 당의정, 베스타제, 웨스탈 2. 까스활명수(병당 50ml), 까스명수(병당 75ml)
352-06	비뇨생식기및항문용약	22 T	린더올 2,5
352-07	감 각 기 관 용 약	7ml 100 T	1. 안약(산스타) 2. 유신코약 내복정
352-08	비 타 민 제	100 T	빠롬정, 비타엠, 아로나민(50mg 당의정)
352-09	홀 돈 제	100 T 100 C	1. 부신피질홀몬제, 웨리솔론정, 호스타코틴H정 2. 혼합 홀몬제(비나폴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52-10	자 양 강 장 제	병 10 병	1. 5%포도당주사액 (1,000 CC) 2. 드링크류병당 100ml 박카스 - D 알프스 - D
352-11	혈액및 체액용약	1,000ml	포도당 5%합량, 중의 (생리식염액), 마크로맥스디
352-12	파 학 요 법 제	100 T 100 T	1. 설파제정당 (Suflame thoxazole) 400mg 박트림, 셉트린 2. 항결핵제 (에탐부톨정당 400mg), 국제에탐부톨, 마이암부톨제 피정
352-13	항 생 물 질 제	100 C 1vial	1. 250mg 「켈 술」 펜브렉스캡셀, 테 라사이크린캡셀 2. 용성황산가나마이신주 1g
352-14	기생충구충제	6 T	정당 100mg (Mebendazole) 비막스, 텔 믹스
352-15	외 피 용 약	20mg	안티푸라민
352-16	창 종 차 료 제	100 T	마로닌정 50mg
352-17	생물학적제제	100ml 1Vial	알부민 25% 주 라이루겐

부록 III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다음의 산업소분류 혹은 세분류는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중 금액조사하는 부분으로서 동분류 해당사업체의 신규색출에 사용토록 개정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서 발췌한 것이다.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세분류 3220 의복제조업

직물, 가죽, 모피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고 재봉하여 의복을 만들고 모자 및 의복악세서티등을 만드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항목의 중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의의, 내의, 모자, 모피옷 악세서티 장갑 멜빵 및 관련제품, 잠옷, 비옷 및 기타 방수외의, 가죽옷, 양털안 반친 의복, 재료를 불문한 의복띠, 손수건, 학사복 및 모자, 무대의상 등이다.

의복수선업은 9520 (제타 및 염색업에 분류된다)

32201 남자용양복 제조업

일상사무 또는 공식사회행사에 입는 양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통적 또는 민족적인 의상, 작업복, 승마복, 벌도의 하의, 가죽옷, 모피 옷 방수코트는 여기에서 제외되나 군, 경찰, 악단, 학생의 정복은 여기에 분류한다.

32202 남자용 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

드레스, 스포츠셔츠, 하의(반바지), 점퍼, 작업복, 내의, 잠옷, 여가복, 체육복, 경기제복등 남자용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되나 가죽 또는 모피장식 의복은 포함된다. 무대의상, 학사복, 비옷은 제외한다.

32203 여자외의 제조업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양장, 스커트, 코트, 비치웨어, 수영복, 보온활동복, 채조복, 경기제복등 여자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된다.

32204 소아용의의 제조업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커트, 스래스, 비치웨어등 소아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205 여자용 및 소아용내의 제조업

여자, 소녀 및 소아용내의, 잠옷 및 기타 몸을 받쳐주도록 설계된 의복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의 주요제품에는 브래지어, 콜셋, 콜셋벨트, 콜세릿, 거들콜셋, 히프벨트, 임신후복띠, 캐미솔, 슈미스, 패티코트, 스텝 잠옷, 팬티, 유아용티받이 등이다.

완전히 고무로 만든 콜셋은 3559에 분류된다.

32206 가죽 및 모피의 복제조업

성별에 관계없이 가죽, 구성가죽, 모피, 인조모피등으로 의복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갑, 타이, 머플러등 의복악세서리는 제외된다.

32207 모자 제조업

벨트, 위은물질, 가죽, 모피, 직물, 깃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모는 3819에 주형프라스틱모자는 3560에 운동경기용 보호모자는 3903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죽 보호모자(소방관헬멧)는 여기에 분류한다. 또한 모자장식물로 여기에 분류한다.

32208 장갑제조업

가죽, 구성가죽, 모피, 인조모피, 직물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완전편직제품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권투용 그로브는 3903에 분류된다.

32209 덜러분류되지않은 의복제조업

종교의식복, 무대의상복, 사롱, 한복, 학사복, 방수복 및 의복악세서리 즉,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타이, 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분류 3522 의약품제조업

세균 및 바이러스 백신, 혈청 및 프라스마와 같은 생물학제품, 의료 화학품 및 항생제, 키닌, 스트리킨, 실파제, 아편 및 유도제, 부신, 카페인, 코데인유도제, 비타민과 같은 생약제품 및 인간 또는 동물용 약조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1 생물학제품 제조업

항혈청, 세균백신, 독신 및 유사제품, 유기요법선과 선의 추출물, 피의 유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품 제조업 항생제 제외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농축물 및 혼합물, 천연홀몬, 합성홀몬, 그리코시드 및 천연 또는 합성 알카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3 항생제 제조업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크로로테트라클린, 액티노마이신등과 같은 항생제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활동은 3524 (약제품제조업)에 분류된다.

35224 약제품 제조업

수의약품은 포함해서 샘플, 정짚술, 연고, 분, 용액등 최종소비를 위하여 완성한 제제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9 달리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않은 의약품제조업으로서 한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동식물 물질을 농축, 추출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록 IV 도량형단위환산표

<표 1> 길 이

	寸	尺	m	in	ft	yd
1 치(寸)	1	0.1	0.03030	1.1930	0.09941	0.03313
1 자(尺)	10	1	0.30303	11.930	0.99419	0.33139
1미터(m)	33	3.3	1	39.370	3.2808	1.0936
1인치(in)	0.8382	0.08382	0.0254	1	0.08333	0.02777
1피트(ft)	10058	1.0058	0.3048	12	1	0.33333
1야드(yd)	30175	3.0175	0.9144	36	3	1

<표 2> 넓 이

	平方尺	坪	m ²	in ²	ft ²	yd ²
1제곱자(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평(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제곱미터(m ²)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제곱인치(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제곱피트(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제곱야드(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표 3> 부 피

	台	升	m ³	ℓ	英 gallon	美 gallon
1 홉 (台)	1	0.1	0.0001803	0.18039	0.03968	0.04765
1 되 (升)	10	1	0.001803	1.8039	0.39681	0.47654
1세제곱미터 (m ³)	5543.5	5543.5	1	1000	219.97	264.27
1리터 (ℓ)	5.5435	0.55435	0.001	1	0.21997	0.26417
1갈론 (gallon 英)	25206	2520.6	0.004545	4.5459	1	1.2009
1갈론 (gallon 美)	20984	2098.4	0.003854	3.7854	0.83270	1

< 표 4 > 부 계

	實	斤	kg	%	英 ton	美 ton	oz	L/B
1 관 (貫)	1	6.25	3.75	0.00375	0.003690	0.004133	132.27	82.671
1 근 (斤)	0.16	1	0.6	0.0006	0.00059051	0.0006613	21.164	1.3227
1 킬로그램 (kg)	0.26666	1.6666	1	0.001	0.0009841	0.001102	35.273	2.2045
1 메트릭톤 (公噸)	266.666	1666.6	1000	1	0.98418	1.1022	35273	2204.5
1 롱 톤 (L/T 英)	270.95	1693.4	1016	1.0160	1	1.12	35.840	2240
1 숏 톤 (S/T 美)	241.92	1512	907.2	0.9072	0.89235	1	32000	2000
1 온스 (oz)	0.00756	0.04725	0.002835	0.00002835	0.0000279	0.00003125	1	0.0625
1 파운드 (L/B)	0.12096	0.756	0.4536	1.0160	0.0004464	0.0005	16	1

가. 주요단위 해설

1) PPM : 용액 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 S (번수, 番數) : 전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야드를 전환 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야드는 I' S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I' S소모사의 길이)

$$(3) 4,3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I' 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 함.

예컨대 32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粗紡機), 정방기(精紡機), 면사기(燃絲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링,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울, 정방기로는 48번수를 0.4파운드로 생산함.

5) 배수톤(排水屯):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5 f^3$ 밀물일 때는 $36 f^3$ 가 1 배수량톤 균합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6) D/W(Dead Weight): 화물을 만제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빼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7) G/T(Gross Tonnage):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f^3$ 를 1G/T으로 한다.

8) 노트(Knot): 배가 1시간에 1해리(1.853 m)를 달리는 속력

9) S/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eet × 1 fee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text{이다.}$$

- | | |
|------------------------------|------------------------|
| [수] 1. 1才 ... 1치 × 1치 × 12 자 | 6. 1坪 ... 3.3 m^2 |
| 2. 1石 ... 180 L | 7. 1坪 ... 1.5 平方呎 |
| 3. 1斤 ... 1.3 Lbs | 8. 木材 ... 3 分板 1 평은 9才 |
| 4. 1貫 ... 8.2 Lbs | 4 分板 1 평은 12才 |
| 5. 1捆 ... 400 Lbs | 5 分板 1 평은 15才 |